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b>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르면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면접심사(2단계)를 거치고,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따른 실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장이 지명하며 전공심사 단계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외인사 2명이 포함되도록 하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공개채용지원 추천자,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고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각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0학년도 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계획(△과)」에 따르면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는 각 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교무처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p> <p><b>【전임교원 공채 심사위원 배제기준 미준수】 ——— ①</b></p> <p>- 서울대학교 A는 2018학년도 2학기 ○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지원자 B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인</p>	<p style="text-align: right;"><b>【① 관련】</b></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right;"><b>【② 관련】</b></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C를 기초 및 전공심사위원으로 추천·위촉하고 채용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1】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과정 논문 지도교수였던 위 C 등 5명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채용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p> <p><b>【공채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비율 미준수】 —— ②</b></p> <p>-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및 연구실적물 평가를 위한 기초 및 전공심사 위원 총 5명 중 1명만 외부위원(20%)으로 위촉하는 등 【붙임2】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공심사위원 구성 관련 외부위원 미충족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 까지 위 □ 등 2개 학과에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외부위원을 2/5 이상 포함하지 않고 채용 심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p>	

**【붙임 1】**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임명 현황**

연 번	학년도 - 학기	채용학과 (전공)	지원자 (출신학교)	심사위원 (소속)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 분야	위원 추천자
1	2018-2	○	B (**대 ○ 석사/박사 수료)	C (**대○)	- (C) 【석사】	기초 및 전공 심사	A
					- (C) 【박사수료】		
2	2018-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		
3	2018-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		
4	2018-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5	2018-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
6	2018-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7	2019-2	-	-	-	-	기초 및 전공 심사	-

**【붙임 2】**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공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외부위원 미충족 현황**

연번	채용 시기	모집학과	모집분야	심사위원수			외부위원 비율(%)
				내부 위원	외부 위원	합계	
1	2018-1	□	-	4	1	5	20
2	2019-2	-	-	4	1	5	20
3	2020-1	-	-	4	1	5	20
4	2020-1	-	-	4	1	5	2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b>교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 미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는 2018학년도 1학기 ▷ 부교수로 D를 신규채용하면서 임용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2018. 3. 1. 임용하는 등 【붙임1】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전임교원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D 등 155명의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임용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li> <li>- 서울대학교 △는 2018학년도 2학기 ▽ 조교수로 E를 신규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2018. 9. 1. 임용하는 등 【붙임2】 “성범죄 경력 미확인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에 신규채용한 위 E 등 56명의 전임교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8명)</li>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자,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li> </ul> </li> </ul>

**【붙임1】**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전임교원 신규채용 현황**

연번	연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임용일자	비고
1	2018	▷	-	D	2018-03-01	
2	2018	-	-	-	2018-03-01	
3	2018	-	-	-	2018-03-01	
4	2018	-	-	-	2018-03-01	
5	2018	-	-	-	2018-03-01	
6	2018	-	-	-	2018-03-01	
7	2018	-	-	-	2018-03-01	
8	2018	-	-	-	2018-03-01	
9	2018	-	-	-	2018-03-01	
10	2018	-	-	-	2018-03-01	
11	2018	-	-	-	2018-03-01	
12	2018	-	-	-	2018-03-01	
13	2018	-	-	-	2018-03-01	
14	2018	-	-	-	2018-03-01	
15	2018	-	-	-	2018-03-01	
16	2018	-	-	-	2018-03-01	
17	2018	-	-	-	2018-03-01	
18	2018	-	-	-	2018-03-01	
19	2018	-	-	-	2018-03-01	
20	2018	-	-	-	2018-03-01	
∴						
145	2019	-	-	-	2019-03-01	
146	2019	-	-	-	2019-03-01	
147	2019	-	-	-	2019-03-01	
148	2019	-	-	-	2019-03-01	
149	2019	-	-	-	2019-03-01	
150	2019	-	-	-	2019-03-01	
151	2019	-	-	-	2019-03-01	
152	2019	-	-	-	2019-03-01	
153	2019	-	-	-	2019-03-01	
154	2019	-	-	-	2019-03-01	
155	2019	-	-	-	2019-03-01	

**【붙임2】**

**성범죄 경력 미확인 전임교원 채용 현황**

연번	연도	소속부서	직급	성명	임용일자	비고
1	2018	▽	-	E	2018-09-01	
2	2018	-	-	-	2018-09-01	
3	2018	-	-	-	2018-09-01	
4	2018	-	-	-	2018-09-01	
5	2018	-	-	-	2018-09-01	
6	2018	-	-	-	2018-09-01	
7	2018	-	-	-	2018-09-01	
8	2018	-	-	-	2018-09-01	
9	2018	-	-	-	2018-09-01	
10	2018	-	-	-	2018-09-01	
⋮						
50	2018	-	-	-	2018-09-01	
51	2018	-	-	-	2018-09-01	
52	2018	-	-	-	2018-09-01	
53	2018	-	-	-	2018-09-01	
54	2018	-	-	-	2018-09-01	
55	2018	-	-	-	2018-09-01	
56	2018	-	-	-	2018-09-0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b>	<p><b>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이 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 동 규정 별표 1내지 4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F는 ◁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G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뇌물수수 등)를 받았음에도 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여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6건의 징계사유 시효가 도과되게 하는 등 【붙임】 “징계의결 미요구에 따른 징계시효 도과 현황”과 같이 위 G 등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보류에 따라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징계(1명)</li>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사건 처리 결과 통보 건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람</li> </ul> </li> </ul>

【붙임】

징계의결 미요구에 따른 징계시효 도과 현황

대상자	연번	혐의사실	수사기관 통보시점	징계시효 기산점	징계시효 완성시점	비고*	
G	1	-	-	-	-	피의사실 통보 당시 시효도과	
	2	-	-	-	-	피의사실 통보 당시 시효도과	
	3	-	-	-	-	피의사실 통보 당시 시효도과	
	4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5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6	-	-	-	-	시효 미도과	
	7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8	-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	-	-	
	9	-	-	-	-	-	시효 미도과
	10	-	-	-	-	-	시효 미도과
	11	-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12	-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	13	-	-	-	-	미요구 중 시효도과	

\* 종합감사일 기준(2021. 10.)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p><b>교원 징계규정 미정비 및 징계의결요구 부적정</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정직 및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은 1호 내지 11호의 감경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은 교원 징계기준에 관하여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고 금전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시험문제 조작 등의 징계사유는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는 교원의 징계양정 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별표3은 건책의 감경결과를 불문(경고)으로 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p> <p><b>【교원 징계규정 미정비】</b> ..... ①</p> <p>-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19. 9월까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을 정한 교원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징계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실이 있고,</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교원 징계관련 규정을 상위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2019. 9월 제정된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 제3조는 「사립학교법」과는 달리 정직 및 감봉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감경제외사유 중 ① 성관련 비위, ② 공직선거법 위반 ③ 부작위·직무태만의 감경제외사유를 누락시키고 있고, 동 규정 별표5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과는 달리 견책을 감경할 경우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 징계관련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자체규정을 제·개정한 사실이 있음.</p> <p>* 견책을 감경할 경우 ‘불문경고’ 처리하도록 규정</p> <p><b>【징계의결요구 부적정】</b> ..... ②</p> <p>- 서울대학교 △는 2020. 10. 30., 서울대학교 H(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9%)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징계양정기준과는 달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p> <p><b>【붙임】</b> “양정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요구 현황”과 같이 2018. 6. 1.부터 2020. 10. 30.까지 위 H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 9건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등에 관한 규칙 및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규정이 정한 양정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이 있음</p> <p>※ 징계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 징계 위원회는 징계양정 기준에 미달한 신분상 조치를 의결</p>	

【붙임】

양정기준에 미달한 징계의결요구 현황

연번	성명	직급	소속	징계의결요구일	징계사유	징계요구수위	징계의결수위	기준*에 따른 양정범위
1	H	-	-	'20.10.3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9%)	경징계	견책	정직(중징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2	-	-	-	'20.8.28.	-	경징계	견책	해임-정직(중징계) (별표1.라.성적비위. 비위정도 약하고 중과실)
3	-	-	-	'20.3.16.	-	경징계	감봉1월	해임(중징계) (별표1.다.회계질서 문란)
4	-	-	-	'20.3.16.	-	경징계	감봉1월	해임(중징계) (별표1.다.회계질서 문란)
5	-	-	-	'20.3.16.	-	경징계	감봉1월	해임(중징계) (별표1.다.회계질서 문란)
6	-	-	-	'20.3.16.	-	경징계	감봉1월	해임(중징계) (별표1.다.회계질서 문란)
7	-	-	-	'20.3.16.	-	경징계	감봉1월	해임(중징계) (별표1.다.회계질서 문란)
8	-	-	-	징계의결미요구	-	경고 (19.1.)	-	감봉-견책(경징계) (혈중알콜농도 0.1미만)
9	-	-	-	'18.6.1.	-	경징계	견책	해임(중징계) (별표1. 7.라. 성폭력)

\* 법인화 이후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2019.9.1.이전까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유추적용, 2019.9.1.부터 2020.9.까지는 서울대 교원징계규정 적용, 2020.9.이후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따른 양정기준임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p><b>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 부적정</b></p> <p>○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소송사건 보수지급 기준으로 신청사건은 200,000원에서 500,000원, 본안사건은 5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p> <p><b>【자문료 지급 관련】</b> .....①</p> <p>-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12. 8. 23. ‘*****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을 법률자문대상자로 지정하고 5,319,000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b>【붙임1】</b> “법률자문료 지급 내역”과 같이 2012. 8. 23.부터 2021. 8. 8.까지 위 ‘***** 관련 자문’ 등 14건의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고문변호사 위촉 없이 계약 건당 4,400,000원부터 55,000,000원까지 총합계 169,653,000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b>【소송수임료 지급 관련】</b> .....②</p> <p>- 서울대학교 ◇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고문변호사 위촉없이 2020. 8. 30. ‘**** 인도’와 관련하여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b>【붙임2】</b> “소송수임료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5.</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법률자문·소송 위임 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위임대상·비용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부터 2021. 8.까지 위 '*****인도' 등 66건의 소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문변호사 위촉 없이 계약 건당 1,500,000원부터 50,000,000원까지 총합계 1,103,500,000원의 소송비용(착수금·성공보수 포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법률자문료 지급 내역

연번	자문대상	자문일시(기간)	자문내용	자문료 (천원)
1	○○	2012.8.23.	***** 관련 자문	5,319
2	-	2012.9.14.	-	5,500
3	-	2013.3.15	-	4,400
4	-	2014.6.24	-	7,700
5	-	2015.11.10.	-	2,842
6	-	2016.1.13.	-	9,900
7	-	2018.7.24.	-	5,500
8	-	2019.10.14 ~ 2019.11.13	-	8,592
9	-	2020.3.20.	-	11,000
10	-	2020.3.25.	-	5,500
11	-	2020.9.1. ~ 2021.2.28	-	22,000
12	-	2021.3.1. ~ 2022.2.28	-	55,000
13	-	2021.3.29	-	4,400
14	-	2021.6.9. ~ 2021.8.8	-	22,000
법률자문료 합계				169,653

【붙임2】

소송수임료 지급 내역

연번	원고	피고	종류	소송대리인	사건명	선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제외)
1	-	-	민사	□□	****인도 ****법원 2018****	1000만원/ 500만원
2	-	-	민사	-	-	1000만원/ 500만원
3	-	-	행정	-	-	1000만원/ 800만원
4	-	-	민사	-	-	1500만원/ 300만원
5	-	-	민사	-	-	1000만원/ 300만원
6	-	-	민사	-	-	1500만원/ 300만원
7	-	-	행정	-	-	1000만원 (500만원)/ 없음
8	-	-	민사	-	-	1000만원 (500만원)/ 없음
9	-	-	민사	-	-	1000만원/ 700만원
10	-	-	행정	-	-	2000만원/ 2000만원
11	-	-	행정	-	-	1500만원/ 1500만원
12	-	-	행정	-	-	1500만원/ 1500만원
13	-	-	행정	-	-	1000만원/ 4000만원
14	-	-	행정	-	-	1000만원/ 2000만원
15	-	-	행정	-	-	1000만원/ 1000만원
16	-	-	행정	-	-	1000만원/ 1000만원
17	-	-	행정	-	-	1000만원/ 1000만원
18	-	-	민사	-	-	1000만원/ 1000만원
19	-	-	민사	-	-	1100만원/ 900만원

연번	원고	피고	종류	소송대리인	사건명	선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제외)
20	-	-	민사	-	-	1200만원/ 800만원
21	-	-	민사	-	-	3000만원/ 2000만원
22	-	-	행정	-	-	1000만원/ 800만원
23	-	-	민사	-	-	1000만원/ 1000만원
24	-	-	행정	-	-	1500만원/ 3500만원
25	-	-	행정	-	-	1000만원/ 1000만원
26	-	-	민사	-	-	2500만원/ 2500만원
27	-	-	행정	-	-	1000만원/ 800만원
28	-	-	민사	-	-	2000만원/ 3000만원
29	-	-	민사	-	-	1000만원/ 1000만원
30	-	-	민사	-	-	1000만원/ 1000만원
31	-	-	헌법 소원	-	-	1000만원/ 800만원
32	-	-	민사	-	-	500만원/ 500만원
33	-	-	헌법 소원	-	-	500만원/ 500만원
34	-	-	민사	-	-	500만원/ 500만원
35	-	-	민사	-	-	700만원/ 700만원
36	-	-	민사	-	-	800만원/ 500만원
37	-	-	민사	-	-	800만원/ 500만원
38	-	-	행정	-	-	900만원/ 1000만원
39	-	-	민사	-	-	800만원/ 800만원

연번	원고	피고	종류	소송대리인	사건명	선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제외)
40	-	-	민사	-	-	500만원/ 500만원
41	-	-	행정	-	-	800만원/ 800만원
42	-	-	행정	-	-	800만원/ 800만원
43	-	-	행정	-	-	500만원/ 500만원
44	-	-	행정	-	-	500만원/ 500만원
45	-	-	민사	-	-	600만원/ 300만원
46	-	-	행정	-	-	400만원/ 400만원
47	-	-	민사	-	-	200만원/ 100만원
48	-	-	민사	-	-	400만원/ 300만원
49	-	-	민사	-	-	300만원/ 300만원
50	-	-	민사	-	-	300만원/ 300만원
51	-	-	민사	-	-	200만원/ 100만원
52	-	-	민사	-	-	500만원/ 500만원
53	-	-	민사	-	-	400만원/ 400만원
54	-	-	민사	-	-	800만원/ 1200만원
55	-	-	민사	-	-	800만원/ 800만원
56	-	-	민사	-	-	700만원/ 없음
57	-	-	민사	-	-	800만원/ 700만원
58	-	-	행정	-	-	200만원/ 100만원
59	-	-	행정	-	-	200만원/ 100만원
60	-	-	행정	-	-	200만원/ 100만원
61	-	-	행정	-	-	500만원/ 300만원
62	-	-	민사	-	-	700만원/ 500만원
63	-	-	민사	-	-	150만원/ 없음

연번	원고	피고	종류	소송대리인	사건명	선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제외)
64	-	-	민사	-	-	300만원/ 300만원
65	-	-	헌법 소원	-	-	800만원/ 800만원
66	-	-	헌법 소원	-	-	400만원/ 400만원
소송비용 합계						5억7750만원/ 5억3600만원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b>교원 복무관리 규정 미제정</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2조 제3항은 교원의 복무 등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그 결과, 서울대학교 교원은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연가·병가·출장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서울대 교원은 연가·병가·출장 등 복무사항을 상급자의 결재나 시스템의 등록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교원의 연가·출장사용 현황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등 복무의무 준수 여부확인 불가 (교내 출장비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처리)</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복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p>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b>직원의 직급별 정원 미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6조 내지 제37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11. 12월 법인화 이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화하지 않은 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별표에 직원의 총 정원(1,200명)만 규정하고,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총장 결재만으로 직급별 정원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인사관리하기 바람</li> </ul> </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p><b>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및 제10장에 따르면 대학의 시간 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상황은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I는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2020학년도 1학기에 △△(강사)로 출강하여 ‘ㄱ’을 강의하는 등 <b>【붙임】</b> “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I 등 교직원 3명은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거나 복무처리 없이 타 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음.</p>	○ 주의(3명)

【붙임】

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등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강현황				겸직 허가	근무 상황 처리
				기관명	과목명	근무기간	시수		
1	-	-	I	△△ (강사)	ㄱ, -	2020.3.1.~12.31. (목:15:00~18:00)	3	×	조퇴 처리
2	-	-	-	-	-	2018.3.1.~2018.6.30. (토:09:00~12:00)	3	×	해당 없음
3	-	-	-	-	-	2020.3.20.~7.3. (금:15:30~18:20)	3	○	×
					-	2020.9.1.~2020.12.21. (화:09:30~12:20)	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9</b>	<p><b>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등</b></p> <p>○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의 내역과 발전기금 출연 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연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로 하고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J는 2016. 3. 25. ~ 2018. 2. 28.까지 ▲▲ 사외이사로 겸직하고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는 등 【붙임1】 “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현황”과 같이 위 J 등 교수 6명은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서울대학교 K는 ●●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2,128,500원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붙임2】 “발전기금 출연금 미납부 현황”과 같이 위 K 등 교수 3명은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합계 26,403,350원을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1명)</p> <p>○ 주의(7명)</p> <p>○ 통보</p> <p>- 사외이사 겸직 이후 보수내역 미보고 및 발전기금 출연금 미납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p>

**【붙임1】**

사외이사 보수내역 미보고 현황

연번	해당연도	소속부서	직급	성명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임기
1	2018	-	-	J	▲▲	사외이사	2016.03.25.~2018.02.28.
					-	사외이사	2016.08.24.~2018.02.28.
2	2018	-	-	-	-	사외이사	2015.06.09.~2018.02.28.
3	2018	-	-	-	-	사외이사	2017.03.20.~2018.02.28.
4	2018	-	-	-	-	사외이사	2017.09.29.~2018.02.28.
5	2018	-	-	-	-	사외이사	2017.03.27.~2018.08.31.
					-	사외이사	2017.10.10.~2018.08.31.
6	2019	-	-	-	-	사외이사	2016.12.16~2019.02.28
					-	사외이사	2016.03.18~2019.02.28

**【붙임2】**

발전기금 출연금 미납부 현황

(단위 : 원)

연번	해당연도	소속부서	직급	성명	겸직기관 (겸직직위)	겸직임기	보수총액	출연대상 금액	납부액	미납부액
1	2018	-	-	K	☉☉ (사외이사)	2016.03.18.~2019.03.17.	88,800,000	10,320,000	8,191,500	2,128,500
2	2018	-	-	-	- (사외이사)	2018.01.01.~2019.02.28.	84,000,000	17,725,650	-	17,725,650
					- (사외이사)	2016.12.16.~2019.02.28	54,171,000			
3	2018	-	-	-	- (사외이사)	2018.05.24.~2020.02.29.	36,961,370	2,544,206	-	2,544,200
	2019						46,700,000	4,005,000	-	4,005,000
납부잔액 합계										26,403,35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10</b>	<p><b>외부강의 복무 미처리</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부칙(제1호, 2011.12.21.) 제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법인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에 따르면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미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상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L은 2018. 5. 18. 복무처리 없이 ▷▷에서 ‘L’ 강의를 하는 등 【붙임】 “외부강의 출강 복무 미처리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L 등 교직원 8명은 복무처리 없이 외부강의를 한 사실이 있음.</p>	○ 주의(8명)

【붙임】

외부강의 출강 복무 미처리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외부강의기관	강의과목	외부강의(시작일)			외부강의(종료일)	
						일자	요일	시각	일자	시각
1	-	-	L	▷▷	ㄴ	2018-05-18	금	15:00	2018-05-18	17:00
2	-	-	-	-	-	2020-08-17	월	08:00	2020-08-19	17:00
				-	-	2020-08-20	목	09:00	2020-08-21	17:00
				-	-	2020-08-24	월	08:00	2020-08-25	17:00
				-	-	2020-08-28	금	08:00	2020-08-29	17:00
3	-	-	-	-	-	2020-09-15	화	14:00	2020-09-15	18:00
4	-	-	-	-	-	2021-02-22	월	13:00	2021-02-22	15:00
5	-	-	-	-	-	2019-08-07	수	13:00	2019-08-07	15:00
6	-	-	-	-	-	2020-09-15	화	15:30	2020-09-16	18:30
7	-	-	-	-	-	2020-02-11	화	14:00	2020-02-11	18:00
				-	-	2020-02-14	금	10:00	2020-02-15	17:00
8	-	-	-	-	-	2018-12-13	목	14:30	2018-12-13	16:30
				-	-	2019-11-07	목	11:00	2019-11-07	12: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p><b>공무(외) 국외여행 미신고</b></p> <p>○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교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국외여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일전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p> <p>- 서울대학교 M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3. 4.부터 2018. 3. 9.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붙임】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 M 등 교원 8명은 총 25회에 걸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p>	○ 주의(8명)

【붙임】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비고
				출발일(요일)		도착일(요일)		
1	-	-	M	2018-03-04	일	2018-03-09	금	공무외
				2018-08-12	일	2018-08-16	목	공무외
				2019-01-31	목	2019-02-09	토	공무외
2	-	-	-	2018-08-01	수	2018-08-03	금	공무외
				2018-10-16	화	2018-10-18	목	공무외
				2019-01-17	목	2019-01-21	월	공무외
				2019-01-25	금	2019-01-28	월	공무외
				2019-02-21	목	2019-02-25	월	공무외
3	-	-	-	2018-07-07	토	2018-08-08	수	공무외
				2019-01-02	수	2019-01-06	일	공무외
4	-	-	-	2019-07-27	토	2019-08-01	목	공무외
				2019-12-19	목	2019-12-22	일	공무외
				2020-01-14	화	2020-01-19	일	공무외
5	-	-	-	2018-05-14	월	2018-05-20	일	공무외
				2018-05-23	수	2018-05-30	수	공무외
				2018-11-25	일	2018-11-28	수	공무외
				2019-01-29	화	2019-02-01	금	공무외
				2019-06-20	목	2019-07-01	월	공무외
6	-	-	-	2019-01-07	월	2019-01-14	월	공무외
				2019-02-18	월	2019-02-27	수	공무외
7	-	-	-	2018-05-28	월	2018-05-30	수	공무
				2018-07-02	월	2018-07-06	금	공무
				2018-10-21	일	2018-10-24	수	공무
				2019-12-07	토	2019-12-13	금	공무
8	-	-	-	2019-12-21	토	2020-02-16	일	공무외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p><b>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지연 및 미이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포함</li> <li>- 서울대학교는 N이 2018. 9. 1. 신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경과한 2018. 11. 27.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붙임1】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 N 등 신규 임용 교직원 75명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수하게 한 사실이 있고,</li> <li>- 또한, 위 대학교 소속 교직원 1,214명이 2018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붙임2】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직원 2,635명(중복포함)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통보</li> <li>-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들에게 대한 교육이수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li> </ul>

**【붙임1】**

**신규 임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지연 또는 미이수 현황**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수료일자	지연일수
1	2018	-	-	N	2018-09-01	2018-11-27	87
2	2019	-	-	-	2019-02-01	2019-05-07	95
3	2019	-	-	-	2019-09-01	2019-11-04	64
4	2020	-	-	-	2020-03-01	2020-05-11	71
5	2020	-	-	-	2020-09-01	2020-11-04	64
6	2020	-	-	-	2020-09-01	2020-11-19	79
7	2018	-	-	-	2018-02-01	2019-04-30	453
8	2018	-	-	-	2018-02-01	2018-04-24	82
9	2018	-	-	-	2018-02-01	2018-05-16	104
10	2018	-	-	-	2018-02-01	2019-11-28	665
11	2018	-	-	-	2018-02-01	2019-04-03	426
12	2018	-	-	-	2018-02-01	2018-06-20	139
13	2018	-	-	-	2018-02-01	2019-10-18	624
14	2018	-	-	-	2018-02-01	2019-02-26	390
15	2018	-	-	-	2018-02-01	2019-06-27	511
16	2018	-	-	-	2018-02-01	2018-04-04	62
17	2018	-	-	-	2018-02-01	2018-08-09	189
18	2018	-	-	-	2018-02-01	2018-05-11	99
19	2018	-	-	-	2018-02-01	2018-11-03	275
20	2018	-	-	-	2018-02-01	2020-05-15	834
21	2018	-	-	-	2018-02-01	2019-03-15	407
22	2018	-	-	-	2018-02-01	2019-11-25	662
23	2018	-	-	-	2018-02-01	-	
24	2018	-	-	-	2018-02-01	2020-03-05	763
25	2018	-	-	-	2018-02-01	2018-06-28	147
26	2018	-	-	-	2018-02-01	2018-12-24	326
27	2018	-	-	-	2018-02-01	2019-10-30	636
28	2018	-	-	-	2018-02-01	2018-11-04	276
29	2018	-	-	-	2018-02-01	2019-10-22	628
30	2018	-	-	-	2018-02-01	2018-12-18	320
31	2018	-	-	-	2018-02-01	-	
32	2018	-	-	-	2018-02-01	2019-12-09	676
33	2018	-	-	-	2018-02-01	2018-12-12	314
34	2018	-	-	-	2018-02-01	2019-07-10	524
35	2018	-	-	-	2018-02-01	2019-01-03	336
36	2018	-	-	-	2018-02-01	2019-11-30	667
37	2018	-	-	-	2018-02-01	2018-11-22	294
38	2018	-	-	-	2018-02-01	2018-10-28	269
39	2018	-	-	-	2018-02-01	2018-07-18	167

연번	년도	소속	직	성명	임용일자	교육수료일자	지연일수
40	2018	-	-	-	2018-02-01	2020-03-04	762
41	2018	-	-	-	2018-02-01	2019-07-22	536
42	2018	-	-	-	2018-02-01	2019-04-03	426
43	2018	-	-	-	2018-02-01	2018-07-19	168
44	2018	-	-	-	2018-02-01	2018-07-23	172
45	2018	-	-	-	2018-02-01	2019-03-25	417
46	2018	-	-	-	2018-02-01	2018-12-20	322
47	2018	-	-	-	2018-02-01	2019-05-27	480
48	2018	-	-	-	2018-02-01	2020-07-08	888
49	2018	-	-	-	2018-02-01	2019-12-04	671
50	2018	-	-	-	2018-02-01	2019-12-18	685
51	2018	-	-	-	2018-02-01	2020-03-04	762
52	2018	-	-	-	2018-02-01	2018-10-17	258
53	2018	-	-	-	2018-02-01	2019-07-02	516
54	2018	-	-	-	2018-02-01	-	
55	2018	-	-	-	2018-02-01	2018-06-28	147
56	2018	-	-	-	2018-02-01	2018-10-04	245
57	2018	-	-	-	2018-02-01	2018-10-04	245
58	2018	-	-	-	2018-02-01	2021-01-04	1068
59	2018	-	-	-	2018-02-01	2019-12-11	678
60	2018	-	-	-	2018-02-01	2019-04-01	424
61	2018	-	-	-	2018-02-01	2019-06-10	494
62	2018	-	-	-	2018-02-01	2019-11-22	659
63	2018	-	-	-	2018-02-07	2018-11-13	279
64	2018	-	-	-	2018-03-01	-	
65	2018	-	-	-	2018-04-01	2019-12-27	635
66	2018	-	-	-	2018-04-03	2019-10-10	555
67	2018	-	-	-	2018-07-01	2018-10-03	94
68	2018	-	-	-	2018-07-01	2019-07-17	381
69	2018	-	-	-	2018-07-01	-	
70	2018	-	-	-	2018-08-01	2019-06-19	322
71	2018	-	-	-	2018-08-01	2019-03-11	222
72	2018	-	-	-	2018-08-01	-	
73	2019	-	-	-	2019-08-19	2020-01-15	149
74	2019	-	-	-	2019-08-19	2020-01-15	149
75	2020	-	-	-	2020-07-01	2020-10-01	92

**【붙임2】**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단위 : 명)

년도	교육 대상 인원	교육이수				교육 미이수 인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2018	3,126	2,186	1,912	1,906	2,030	940	1,214	1,220	1,096
2019	3,163	2,551	2,343	2,387	2,340	612	820	776	823
2020	3,168	2,577	2,567	2,574	2,563	591	601	594	605
계	9,457	7,314	6,822	6,867	6,933	2,143	2,635	2,590	2,5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p><b>취업규칙 필수사항 미기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19 고용노동부)」 IV.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20. 11. 9.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및 「시설관리직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기 바람</li> </ul> </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14</b>	<p><b>이중학적 미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학, 편입학 등의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70조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16. 3. 1. ♣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 학생에 대하여 이중 학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 학생이 2016. 3. 1.부터 2018. 8. 29.까지 ☆학과 석사 과정*과 ♣학과 학사과정**을 이중으로 등록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li> </ul> <p>* 입학 2015.3.1., 졸업 2018.8.29., 학번 2015-*****            ** 입학 2016.3.1., 졸업 2018.8.29., 학번 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1명)</li> <li>○ 통보</li> <li>- 편입학 전형 시 입학생에 대한 이중학적을 확인하기 바람</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p><b>장학금 지급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9조의2(자격상실)에 따르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교외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등은 장학생 실격사유로 하고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학과 3학년 P가 2020. 12. 9. 중간고사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2021. 1. 6. '단대맞춤형 추가-저소득' 장학금 1,22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4명)</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b>전과(부) 제도 운영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제4조(지원자격)[신설 2018.6.15.]에 따르면 전과의 지원자격으로 3학년은 4개 또는 5개 학기를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4학년은 6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고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과는 ▲학과 3학년 Q(7학기 79학점 취득)가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전과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2019. 1. 9. ►학과 4학년 전과를 허가하는 등 【붙임】 “기준 미달자 전과(부) 현황”과 같이 2019 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 Q 등 19명의 전과를 허가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주의</li> </ul>

【붙임】

기준 미달자 전과(부)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학년	이수 학기	이수 학점	구 기준*	개정기 준	평점 평균	신청일자	신청학과(부)	소속학과(부)
1	2019	1학기	-	Q	4	7	79	○	×	3.87	2019-01-09	▶	▲
2	2019	1학기	-	-	4	7	69	○	×	2.65	2019-01-09	-	-
3	2019	1학기	-	-	4	7	92	○	×	3.48	2019-01-07	-	-
4	2019	1학기	-	-	4	7	92	○	×	3.18	2019-01-11	-	-
5	2019	1학기	-	-	4	8	74	○	×	3.16	2019-01-07	-	-
6	2019	1학기	-	-	3	6	92	○	×	4.14	2019-01-07	-	-
7	2019	1학기	-	-	3	6	70	○	×	3.15	2019-01-11	-	-
8	2019	1학기	-	-	3	6	88	○	×	3.8	2019-01-11	-	-
9	2019	1학기	-	-	3	6	71	○	×	3.23	2019-01-10	-	-
10	2019	1학기	-	-	3	6	97	○	×	3.32	2019-01-08	-	-
11	2019	1학기	-	-	3	6	87	○	×	3.51	2019-01-08	-	-
12	2019	1학기	-	-	3	6	87	○	×	3.53	2019-01-09	-	-
13	2019	1학기	-	-	3	6	67	○	×	4.01	2019-01-07	-	-
14	2019	1학기	-	-	3	6	96	○	×	4.11	2019-01-07	-	-
15	2019	1학기	-	-	3	6	94	○	×	3.87	2019-01-07	-	-
16	2019	1학기	-	-	3	6	80	○	×	3.04	2019-01-09	-	-
17	2019	1학기	-	-	3	6	97	○	×	3.55	2019-01-09	-	-
18	2020	1학기	-	-	3	6	77	○	×	3.71	2020-01-08	-	-
19	2020	1학기	-	-	3	6	89	○	×	3.59	2020-01-07	-	-

\* 「(구)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제2조 : 전과(부)의 지원자격은 4회 이상 등록하고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2012.7.12.일부개정)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p><b>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b></p> <p>○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8년 이후 1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2018년 신규 개설한 “ㄷ”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ㄷ” 등 총 6개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기관경고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현황

연번	연도	강좌명	강사명	수강 인원 (명)	교육일시 (요일 및 시간)	비고
1	2018	ㄷ	-	20	매주 수요일 19:00-21:30 (14주) 1학기/2학기	신규
2	2018	-	-	372	강좌별 상이 (회 당 3시간/1-2회) 동계/하계	신규
3	2018	-	-	51	주차별 상이 (회당 3-8시간/20주)	신규
4	2020	-	-	134	강좌별 상이 (회 당 2시간/5-8회) 입문/심화/실전/자격 과정 운영	신규
5	2020	-	-	197	매주 수요일 18:00-20:30 (8주)	신규
6	2021	-	-	143	강좌별 상이 (회 당 2-3시간/3-8회) 동계/하계	신규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18</b>	<p><b>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 제7조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 또는 “U”인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동일교과목 및 대체교과목 포함)을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과)’에 따르면 학사과정 학생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은 “A0”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R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생 S가 재수강한 “ㄴ”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붙임】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 까지 위 R 등 교원 8명은 위 S 등 학생 11명이 재수강한 위 “ㄴ” 등 10개 교과목에 대하여 “A0” 이하가 아닌 “A+”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li> </ul>	○ 경고(8명)

【붙임】

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연 번	학년도 -학기	학과(부)	교과목명	교과 구분	학 점	담당교수		수강학생		성 적
						직위	교수명	학번	성명	
1	2018-1	-	르	전필	3	-	R	-	S	A+
2	2019-1	-	-	교양	3	-	-	-	-	A+
4	2019-1	-	-	교양	3	-	-	-	-	A+
5	2019-1	-	-	교양	3	-	-	-	-	A+
7	2019-1	-	-	전선	3	-	-	-	-	A+
6	2019-2	-	-	전선	2	-	-	-	-	A+
3	2020-1	-	-	교양	3	-	-	-	-	A+
8	2020-1	-	-	전선	3	-	-	-	-	A+
9								-	-	A+
10	2021-1	-	-	전선	3	-	-	-	-	A+
11	2021-1	-	-	교양	2	-	-	-	-	A+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p><b>출석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교과목의 이수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li>- 서울대학교 T는 2018학년도 2학기 ‘□’ 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학생 U가 총 15일 중 8일(53%)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D’로 부여하는 등 <b>【붙임】</b> “출석 기준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T 등 교원 4명은 위 ‘□’ 등 총 6과목의 성적을 부여하면서, 위 U 등 학생 7명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D~C+’로 부여한 사실이 있음</li>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4명)</li> <li>○ 통보</li> <li>-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 7명에 대하여 학칙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li> </ul>

【붙임】

출석 기준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

연 번	교과목 담당교수			학년 도 -학기	교과목명	학생		학 점	수업일수 (수업시간)	출석일수 (출석시간)	출석 비율	성 적
	소속	직급	성명			학번	성명					
1	-	-	T	2018-2	□	-	U	3	15 (30)	7 (14)	47%	D
2						-	-	3	15 (30)	7 (14)	47%	D
3				2019-2	-	-	-	3	15 (30)	7.5 (15)	50%	C0
4				2019-1	-	-	-	3	15 (30)	8 (16)	53%	C+
5	-	-	-	2020-2	-	-	-	3	15 (30)	8 (16)	53%	D-
6	-	-	-	2021-1	-	-	-	1	15 (15)	9 (9)	60%	D+
7	-	-	-	2021-1	-	-	-	3	15 (30)	6 (12)	40%	C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p><b>퇴직 예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2018~2020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 지침」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학년도별로 18시간으로 하고, 정규학기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은 책임시간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해야 하며, 책임시간 미달 교원에 대하여 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에서는 책임시간 준수 여부를 교수업적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li>-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를 운영하면서, 2018. 8. 31. 퇴직예정자인 V가 책임시간 총 3시간(누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붙임】 “퇴직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V 등 퇴직예정 교원 33명이 책임시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2시간, 합계 110시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통보</li> <li>- 책임시간을 미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li> </ul>

【붙임】

퇴직 전임교원 책임시간 미준수 현황

연번	개인번호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성명	미이행 사수(누계)	퇴직일자	비고
1	-	-	-	-	V	3	2018-08-31	정년퇴직
2	-	-	-	-	-	3	2018-08-31	정년퇴직
3	-	-	-	-	-	12	2019-02-28	정년퇴직
4	-	-	-	-	-	3	2019-08-31	정년퇴직
5	-	-	-	-	-	3	2019-08-31	정년퇴직
6	-	-	-	-	-	3	2020-08-31	정년퇴직
7	-	-	-	-	-	2	2018-08-31	정년퇴직
8	-	-	-	-	-	2	2018-08-31	정년퇴직
9	-	-	-	-	-	2	2019-02-28	정년퇴직
10	-	-	-	-	-	3	2019-08-31	정년퇴직
11	-	-	-	-	-	4	2019-08-31	정년퇴직
12	-	-	-	-	-	1	2019-08-31	정년퇴직
13	-	-	-	-	-	1	2020-02-29	정년퇴직
14	-	-	-	-	-	1	2020-08-31	정년퇴직
15	-	-	-	-	-	8	2021-02-28	정년퇴직
16	-	-	-	-	-	2	2019-08-31	정년퇴직
17	-	-	-	-	-	2	2020-08-31	정년퇴직
18	-	-	-	-	-	3	2018-08-31	정년퇴직
19	-	-	-	-	-	6	2020-02-29	정년퇴직
20	-	-	-	-	-	3	2020-08-31	정년퇴직
21	-	-	-	-	-	3	2020-08-31	정년퇴직
22	-	-	-	-	-	2	2021-08-31	정년퇴직
23	-	-	-	-	-	4	2018-08-31	정년퇴직
24	-	-	-	-	-	12	2020-02-29	정년퇴직
25	-	-	-	-	-	1	2020-02-29	정년퇴직
26	-	-	-	-	-	3	2021-02-28	정년퇴직
27	-	-	-	-	-	6	2021-08-31	정년퇴직
28	-	-	-	-	-	3	2020-08-31	정년퇴직
29	-	-	-	-	-	1	2021-02-28	정년퇴직
30	-	-	-	-	-	3	2020-08-31	정년퇴직
31	-	-	-	-	-	3	2020-08-31	명예퇴직
32	-	-	-	-	-	1	2021-02-28	정년퇴직
33	-	-	-	-	-	1	2020-08-31	정년퇴직
합계						11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p><b>성적정정 기간 미준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14.7.14.)」 제6조에 따르면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고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 누락이 있을 때, 학장은 당해학기 종강일 후 4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2018~2021학년도 성적처리 안내’에 따르면 졸업 및 장학업무 처리 등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입력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W는 2018학년도 2학기 ‘B’ 과목에서 당초 “F” 성적을 받은 X 학생의 성적을 성적 정정 기한(2019. 1. 11.)이 21일 초과한 2019. 2. 1.에 “A+”로 정정하는 등 【붙임】 “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2학기에 위 W 등 교원 3명은 위 X 등 학생 5명에 대하여 정정기한이 최소 21일에서 최대 77일 지난 후 성적을 정정한 사실이 있음</li> </ul>	○ 주의(3명)

【붙임】

성적 정정 기간 미준수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성적 정정 신청자			정정 마감일	실제 정정일	초과 일수	과목명	대상학생			성적정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학과	학번	성명	당초	정정
1	2018	2	-	-	W	2019-01-11	2019-02-01	21	ㄴ	-	-	X	F	A+
2	2018	2	-	-	-	2019-01-11	2019-02-01	21	-	-	-	-	U	S
3	2018	2	-	-	-	2019-01-11	2019-02-01	21	-	-	-	-	U	S
4	2018	2	-	-	-	2019-01-11	2019-02-01	21	-	-	-	-	U	S
5	2018	2	-	-	-	2019-01-11	2019-03-29	77	-	-	-	-	D0	B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p><b>BK장학금 중복 지급</b></p> <p>○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 제11조에 따르면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참여 대학원생은 주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보조·강의보조 및 학사행정보조 등을 위하여 위촉된 강의·연구지원장학생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인원 배정 기준과 장학생 자격기준 등을 정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며, BK21사업 연구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학과 학생 Y에게 강의·연구지원장학금 5,400,000원을 지원하였음에도 BK연구장학금 5,000,000원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등</p> <p><b>【붙임】 “장학금 중복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Y 등 학생 47명에게 강의·연구지원장학금 합계 303,535,000원을 지급하고도 BK장학금 합계 293,681,667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음</b></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BK장학금과 강의 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 목적, 취지를 검토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p>

【붙임】

장학금 중복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번	수혜학기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수혜당시 학적상태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BK21연구 장학금
1	2018-1학기	-	-	-	Y	수료 (연구생)	5,400,000	5,000,000
2	2018-1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6,600,000
3	2018-1학기	-	-	-	-	재학	5,028,000	3,600,000
4	2018-1학기	-	-	-	-	재학	5,002,000	4,950,000
5	2018-1학기	-	-	-	-	재학	5,602,000	6,000,000
6	2018-1학기	-	-	-	-	재학	5,771,000	1,000,000
7	2018-2학기	-	-	-	-	재학	5,602,000	6,000,000
8	2018-2학기	-	-	-	-	재학	5,771,000	3,600,000
9	2018-2학기	-	-	-	-	재학	3,602,000	1,000,000
10	2019-1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6,000,000
11	2019-1학기	-	-	-	-	재학	7,420,000	6,000,000
12	2019-1학기	-	-	-	-	재학	5,602,000	6,100,000
13	2019-1학기	-	-	-	-	재학	5,028,000	3,600,000
14	2019-1학기	-	-	-	-	재학	5,002,000	3,600,000
15	2019-1학기	-	-	-	-	재학	5,602,000	6,700,000
16	2019-1학기	-	-	-	-	재학	5,602,000	4,500,000
17	2019-1학기	-	-	-	-	재학	5,771,000	3,000,000
18	2019-2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5,425,000
19	2019-2학기	-	-	-	-	재학	5,628,000	1,300,000
20	2019-2학기	-	-	-	-	재학	4,802,000	3,000,000
21	2019-2학기	-	-	-	-	재학	200,000	600,000
22	2019-2학기	-	-	-	-	재학	6,820,000	3,600,000
23	2019-2학기	-	-	-	-	재학	5,171,000	840,000
24	2019-2학기	-	-	-	-	재학	4,909,000	1,000,000
25	2020-1학기	-	-	-	-	재학	5,628,000	6,000,000
26	2020-1학기	-	-	-	-	재학	5,602,000	3,000,000
27	2020-1학기	-	-	-	-	재학	5,002,000	4,600,000
28	2020-1학기	-	-	-	-	재학	5,602,000	2,000,000
29	2020-1학기	-	-	-	-	재학	4,909,000	6,000,000
30	2020-1학기	-	-	-	-	재학	5,602,000	2,000,000

연 번	수혜학기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수혜당시 학적상태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BK21연구 장학금	
31	2020-1학기	-	-	-	-	재학	5,171,000	4,800,000	
32	2020-1학기	-	-	-	-	재학	4,478,000	3,000,000	
33	2020-2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6,000,000	
34	2020-2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6,000,000	
35	2020-2학기	-	-	-	-	재학	5,002,000	4,200,000	
36	2020-2학기	-	-	-	-	재학	5,628,000	7,800,000	
37	2020-2학기	-	-	-	-	재학	5,628,000	7,800,000	
38	2020-2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15,000,000	
39	2020-2학기	-	-	-	-	재학	5,002,000	4,200,000	
40	2020-2학기	-	-	-	-	재학	5,628,000	7,800,000	
41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2,800,000	
42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4,200,000	
43	2020-2학기	-	-	-	-	재학	5,002,000	4,200,000	
44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4,200,000	
45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4,200,000	
46	2020-2학기	-	-	-	-	재학	5,002,000	3,000,000	
47	2020-2학기	-	-	-	-	재학	4,909,000	7,800,000	
48	2020-2학기	-	-	-	-	재학	4,909,000	7,800,000	
49	2020-2학기	-	-	-	-	재학	5,002,000	6,000,000	
50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4,200,000	
51	2020-2학기	-	-	-	-	재학	4,309,000	4,200,000	
52	2020-2학기	-	-	-	-	재학	5,771,000	1,300,000	
53	2020-2학기	-	-	-	-	재학	5,078,000	7,800,000	
54	2020-2학기	-	-	-	-	재학	4,909,000	15,000,000	
55	2021-1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7,000,000	
56	2021-1학기	-	-	-	-	수료 (연구생)	5,400,000	4,266,667	
57	2021-1학기	-	-	-	-	재학	5,002,000	3,500,000	
58	2021-1학기	-	-	-	-	재학	4,909,000	12,500,000	
59	2021-1학기	-	-	-	-	재학	5,771,000	6,500,000	
	합 계							303,535,000	293,681,667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23</b>	<p><b>조교업무 활동 대학원생 처우 부적정</b></p> <p>○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18.12.14.)」 제25조 및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17.12.14.)」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를 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원생 권익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가이드라인(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원생 조교 간 복무기간, 복무장소, 복무내용, 금전적 보상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생 조교의 운영 책임자(실제 운영 부서장 및 운영 교수 등)는 조교의 복무 및 금전적 보상 등 조교 제반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입학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에 해당하는 자</p>	<p>○ 경고(5명)</p> <p>○ 통보</p> <p>- 대학원생의 조교 활동에 부합하는 인건비 지급 등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lt; 별도조치 &gt;</p> <p>○ 통보</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 서울대학교 ◀학부는 2018학년도 1학기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Z에게 ‘ㄱ’ 과목 강의 또는 채점 등 대학원 조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BK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붙임1】 “조교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BK 장학금 대체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까지 위 Z 등 대학원생 138명에게 위 ‘ㄱ’ 등 314개(중복포함) 과목에 대하여 강의 또는 채점 업무 등 대학원 조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BK장학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p> <p>※ ◀학부는 자체적으로 ‘대학원 신입생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마련(2018~2021)한 후 장학금(외부장학금 포함)을 받는 대학원생들에게 모두 ◀학부 대학원 조교 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하여 BK 참여 대학원생에게도 조교 업무 부과</p> <p>- 또한, 대학원생 AA에게 2018학년도 1학기 ‘ㅇ’ 과목 강의 또는 채점 등을 담당하게 하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붙임2】 “조교 업무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미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까지 위 AA 등 대학원생 25명에게 위 ‘ㅇ’ 등 25개(중복포함) 과목에 대하여 강의 또는 채점 업무 등 대학원 조교업무를 담당하게 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1】**

**조교 업무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BK 장학금 대체 지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학년도/학기	학번	성명	강의 또는 채점 과목		지급액(월)
				과목명1	과목명2	
1	2018-1	-	Z	ㅅ	-	1,000
2	2018-1	-	-	-	-	1,000
3	2018-1	-	-	-	-	1,000
4	2018-1	-	-	-	-	1,000
5	2018-1	-	-	-	-	1,000
6	2018-1	-	-	-	-	1,000
7	2018-1	-	-	-	-	1,000
8	2018-1	-	-	-	-	1,000
9	2018-1	-	-	-	-	1,000
10	2018-1	-	-	-	-	1,000
⋮						
300	2021-1	-	-	-	-	1,000
301	2021-1	-	-	-	-	1,000
302	2021-1	-	-	-	-	1,000
303	2021-1	-	-	-	-	1,000
304	2021-1	-	-	-	-	1,000
305	2021-1	-	-	-	-	1,000
306	2021-1	-	-	-	-	1,000
307	2021-1	-	-	-	-	1,000
308	2021-1	-	-	-	-	1,000
309	2021-1	-	-	-	-	1,000
310	2021-1	-	-	-	-	1,000
311	2021-1	-	-	-	-	1,000
312	2021-1	-	-	-	-	1,350
313	2021-1	-	-	-	-	1,600
314	2021-1	-	-	-	-	1,600
				합계		328,800

【붙임2】

조교 활동 대학원생 인건비 미지급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학년도-학기	학번	성명	강의 또는 채점 과목	
				과목명1	과목명2
1	2018-1	-	AA	○	-
2	2018-1	-	-	-	-
3	2018-1	-	-	-	-
4	2018-2	-	-	-	-
5	2018-2	-	-	-	-
6	2018-2	-	-	-	-
7	2018-2	-	-	-	-
8	2019-1	-	-	-	-
9	2019-1	-	-	-	-
10	2019-1	-	-	-	-
11	2019-1	-	-	-	-
12	2019-1	-	-	-	-
13	2020-1	-	-	-	-
14	2020-2	-	-	-	-
15	2020-2	-	-	-	-
16	2020-2	-	-	-	-
17	2020-2	-	-	-	-
18	2020-2	-	-	-	-
19	2020-2	-	-	-	-
20	2020-2	-	-	-	-
21	2021-1	-	-	-	-
22	2021-1	-	-	-	-
23	2021-1	-	-	-	-
24	2021-1	-	-	-	-
25	2021-1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24</b>	<p><b>강의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b></p> <p>○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16.7.20.)」에 따르면 자격은 학문후속세대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으로 배정(과별TO아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학기 사용하지 않는 인원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학부 대학원은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학부 대학원생 AB를 선정한 후,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교수 1인당 지도학생 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AB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실제 논문지도교수(AC, 세부전공 ㄷ)와 다른 교수(AD, 세부전공 ㄷ)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여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4,917,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붙임】 “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대학원생 88명에게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실제와 다른 교수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강의연구지원금 합계 426,201천원을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2명)</p> <p>○ 주의(3명)</p>

【붙임】

장학금 지급 요건 임의 변경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	지급액	졸업논문 지도교수명
				당초				변경					
				학부(과)	직급	성명	세부전공	직급	성명	세부전공			
1	2018-1	-	AB	-	-	AC	ㅈ	-	AD	ㅊ	관심분야변경	4,917,000	-
2	2018-1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3	2018-1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4	2018-1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5	2018-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5,400,000	-
6	2018-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7	2018-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5,400,000	-
8	2018-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5,400,000	-
9	2018-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10	2018-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5,400,000	-
11	2018-1	-	-	-	-	-	-	-	-	-	논문주제변경	5,400,000	-
12	2018-2	-	-	-	-	-	-	-	-	-	논문주제변경	3,000,000	-
13	2018-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14	2018-2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15	2018-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5,400,000	-
16	2018-2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17	2018-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	지금액	졸업논문 지도교수명
				당초				변경					
				학부(과)	직급	성명	세부전공	직급	성명	세부전공			
18	2018-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19	2018-2	-	-	-	-	-	-	-	-	-	연구분야변경	5,400,000	-
20	2018-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21	2018-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22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917,000	-
23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24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25	2019-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317,000	-
26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27	2019-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28	2019-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29	2019-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317,000	-
30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31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32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33	2019-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34	2019-1	-	-	-	-	-	-	-	-	-	연구주제 변경	5,400,000	-
35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917,000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	지금액	졸업논문 지도교수명
				당초				변경					
				학부(과)	직급	성명	세부전공	직급	성명	세부전공			
36	2019-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37	2019-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38	2019-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39	2019-2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317,000	-
40	2019-2	-	-	-	-	-	-	-	-	-	연구다양화	5,400,000	-
41	2019-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42	2019-2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917,000	-
43	2019-2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917,000	-
44	2019-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917,000	-
45	2019-2	-	-	-	-	-	-	-	-	-	연구분야변경	4,917,000	-
46	2019-2	-	-	-	-	-	-	-	-	-	연구분야변경	4,917,000	-
47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5,400,000	-
48	2020-1	-	-	-	-	-	-	-	-	-	논문주제변경	5,400,000	-
49	2020-1	-	-	-	-	-	-	-	-	-	연구분야 확장	5,400,000	-
50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51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52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53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54	2020-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917,000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	지급액	졸업논문 지도교수명
				당초				변경					
				학부(과)	직급	성명	세부전공	직급	성명	세부전공			
55	2020-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56	2020-1	-	-	-	-	-	-	-	-	-	관심분야 변화	4,917,000	-
57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317,000	-
58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317,000	-
59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0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1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2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3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64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5	2020-2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66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317,000	-
67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317,000	-
68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317,000	-
69	2020-2	-	-	-	-	-	-	-	-	-	지도교수 장년퇴임	5,400,000	-
70	2020-2	-	-	-	-	-	-	-	-	-	관심분야변경	5,400,000	-
71	2020-2	-	-	-	-	-	-	-	-	-	논문주제변경	5,400,000	-
72	2020-2	-	-	-	-	-	-	-	-	-	관심주제변경	5,400,000	-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성명	논문지도교수							변경사유	지급액	졸업논문 지도교수명
				당초				변경					
				학부(과)	직급	성명	세부전공	직급	성명	세부전공			
73	2020-2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917,000	-
74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3,000,000	-
75	2020-2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76	2021-1	-	-	-	-	-	-	-	-	-	논문주제변경	4,317,000	-
77	2021-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317,000	-
78	2021-1	-	-	-	-	-	-	-	-	-	전공분야변경	4,617,000	-
79	2021-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80	2021-1	-	-	-	-	-	-	-	-	-	논문주제변경	4,317,000	-
81	2021-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5,400,000	-
82	2021-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917,000	-
83	2021-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84	2021-1	-	-	-	-	-	-	-	-	-	관심분야변경	4,500,000	-
85	2021-1	-	-	-	-	-	-	-	-	-	지도교수 퇴임	4,917,000	-
86	2021-1	-	-	-	-	-	-	-	-	-	연구주제변경	4,917,000	-
87	2021-1	-	-	-	-	-	-	-	-	-	논문주제변경	4,917,000	-
88	2021-1	-	-	-	-	-	-	-	-	-	세부전공변경	4,317,000	-
합 계											426,201,0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25</b>	<p><b>업무추진비 등 미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출관은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비로 그 성질상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 지급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지침」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등 개선금 집행을 요청한 분임계약관은 그 경비 지출을 완료한 후 5일 이내 정산하여 증빙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는데도,</li> <li>-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1. 3. AE에게 업무추진비 1,000,000원을 개선금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 “업무추진비·임원섭외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임직원 11명에게 업무추진비 등 합계 199,931,450원을 개선금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7명)</li> <li>○ 통보</li> <li>- 전 AE 등 12명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등 개선금 합계 199,931,450원에 대해 정산하고, 미정산 금액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발전기금회계로 세입처리하기 바람</li> </ul>

【붙임】

업무추진비·임원섭외비 미정산 현황

(금액단위 : 원)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1	2018.01.03	AE	임원 활동비 1월분 지급	1,000,000	계정 : 업무추진비
2	2018.01.31	AE	임원 활동비 2월분 지급	1,000,000	
3	2018.02.28	AE	임원 활동비 3월분 지급	1,000,000	
4	2018.03.30	AE	임원 활동비 4월분 지급	1,000,000	
5	2018.04.30	AE	임원 활동비 4월분 지급	1,000,000	
6	2018.05.23	AE	임원 활동비 6월분 지급	1,000,000	
7	2018.06.29	AE	임원 활동비 7월분 지급	1,000,000	
<b>소계</b>				<b>7,000,000</b>	
1	2019.04.05	-	임원 활동비 4월분 지급	1,000,000	계정 : 업무추진비
2	2019.05.01	-	임원 활동비 5월분 지급	1,000,000	계정 : 임원섭외비
3	2019.06.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1,000,000	
4	2019.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1,000,000	
5	2019.08.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1,000,000	
6	2019.09.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000,000	
7	2019.10.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1,000,000	
8	2019.11.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1,000,000	
9	2019.12.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1,000,000	
10	2020.0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1,000,000	
11	2020.02.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1,000,000	
12	2020.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1,000,000	
13	2020.03.24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추가 지급	1,000,000	
14	2020.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2,000,000	
15	2020.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추가 지급	1,000,000	
16	2020.05.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3,000,000	
17	2020.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3,000,000	
18	2020.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3,000,000	
19	2020.08.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3,000,000	
20	2020.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3,000,000	
21	2020.10.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3,000,000	
22	2020.1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3,000,000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23	2020.1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3,000,000	
24	2021.01.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3,000,000	
25	2021.0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3,000,000	
26	2021.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3,000,000	
27	2021.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3,000,000	
28	2021.05.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3,000,000	
29	2021.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3,000,000	
30	2021.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3,000,000	
31	2021.08.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3,000,000	
32	2021.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3,000,000	
<b>소계</b>				<b>67,000,000</b>	
1	2018.01.0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700,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8.01.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700,000	
3	2018.02.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700,000	
4	2018.03.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700,000	
5	2018.04.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700,000	
6	2018.05.2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700,000	
7	2018.06.2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700,000	
<b>소계</b>				<b>4,900,000</b>	
1	2019.02.1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525,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9.02.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700,000	
3	2019.03.2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700,000	
4	2019.05.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474,200	
<b>소계</b>				<b>2,399,200</b>	
1	2019.05.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225,8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9.06.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700,000	
3	2019.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700,000	
4	2019.08.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700,000	
5	2019.09.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700,000	
6	2019.10.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700,000	
7	2019.11.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700,000	
8	2019.12.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700,000	
9	2020.0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700,000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10	2020.02.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700,000		
11	2020.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700,000		
12	2020.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700,000		
13	2020.05.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700,000		
14	2020.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700,000		
15	2020.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700,000		
16	2020.08.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700,000		
17	2020.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700,000		
18	2020.10.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700,000		
19	2020.1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700,000		
20	2020.1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700,000		
21	2021.01.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1월분)	700,000		
22	2021.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4월분)	175,000		
<b>소계</b>				<b>14,400,800</b>		
1	2021.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4월분)	1,925,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21.05.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5월분)	700,000		
3	2021.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7월분) (6월 소급)	210,000		
<b>소계</b>				<b>2,835,000</b>		
1	2021.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7월분)	1,190,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21.08.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8월분)	700,000		
3	2021.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지급(9월분)	700,000		
<b>소계</b>				<b>2,590,000</b>		
1	2018.01.0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1,450,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8.01.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1,450,000		
3	2018.02.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1,450,000		
4	2018.03.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1,450,000		
5	2018.04.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1,450,000		
6	2018.05.2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1,450,000		
7	2018.06.2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1,450,000		
8	2018.07.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1,450,000		
9	2018.08.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450,000		
10	2018.09.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1,450,000		
11	2018.10.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1,450,000		
12	2018.11.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1,450,000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13	2019.01.02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1,450,000	
14	2019.02.1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362,500	
<b>소계</b>				<b>19,212,500</b>	
1	2019.02.1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1,087,5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9.02.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1,450,000	
3	2019.03.2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1,450,000	
4	2019.05.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1,450,000	
5	2019.06.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1,450,000	
6	2019.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1,450,000	
7	2019.08.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1,450,000	
8	2019.09.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450,000	
9	2019.10.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1,450,000	
10	2019.11.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1,450,000	
11	2019.12.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1,450,000	
12	2020.0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1,450,000	
13	2020.02.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1,450,000	
14	2020.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1,450,000	
15	2020.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1,450,000	
16	2020.05.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1,450,000	
17	2020.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1,450,000	
18	2020.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1,450,000	
19	2020.08.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1,450,000	
20	2020.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450,000	
21	2020.10.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1,450,000	
22	2020.1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1,450,000	
23	2020.1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1,450,000	
24	2021.01.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1,450,000	
25	2021.0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1,450,000	
26	2021.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1,450,000	
27	2021.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1,450,000	
28	2021.05.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1,450,000	
29	2021.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1,450,000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30	2021.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1,450,000	
31	2021.08.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1,450,000	
32	2021.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450,000	
<b>소계</b>				<b>46,037,500</b>	
1	2018.01.0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950,00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8.01.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950,000	
3	2018.02.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950,000	
4	2018.03.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950,000	
5	2018.04.30	-	임원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950,000	
6	2018.05.23	-	임원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950,000	
7	2018.06.29	-	임원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950,000	
8	2018.07.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950,000	
9	2018.08.31	-	임원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950,000	
10	2018.09.28	-	임원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950,000	
<b>소계</b>				<b>9,500,000</b>	
1	2019.09.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1,256,450	계정 : 임원섭외비
2	2019.10.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950,000	
3	2019.11.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950,000	
4	2019.12.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950,000	
5	2020.0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950,000	
6	2020.02.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950,000	
7	2020.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950,000	
8	2020.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950,000	
9	2020.05.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950,000	
10	2020.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950,000	
11	2020.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950,000	
12	2020.08.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950,000	
13	2020.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950,000	
14	2020.10.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0월분 지급	950,000	
15	2020.11.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1월분 지급	950,000	
16	2020.1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2월분 지급	950,000	
17	2021.01.05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1월분 지급	950,000	
18	2021.02.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2월분 지급	950,000	

연번	지급일	지급대상	내역	지급액	비고
19	2021.03.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3월분 지급	950,000	
20	2021.04.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4월분 지급	950,000	
21	2021.05.03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5월분 지급	950,000	
22	2021.06.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6월분 지급	950,000	
23	2021.07.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7월분 지급	950,000	
24	2021.08.02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8월분 지급	950,000	
25	2021.09.01	-	임원 활동비 및 섭외 활동경비 9월분 지급	950,000	
<b>소계</b>				<b>24,056,450</b>	
<b>총계</b>				<b>199,931,450</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26</b>	<p><b>업적보상비 지급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의 보상 이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예산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사장이 관장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li> <li>-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18. 3. 30. AE에게 업적보상비(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업적보상비 지급 내역”과 같이 2018. 3.부터 2021. 9.까지 위 AE 등 2명에게 업적보상비(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분기별 적게는 2,000,000원 부터 많게는 3,000,000원까지 정액으로 합계 29,233,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7명)</li> <li>○ 통보</li> <li>- 향후 업적보상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li> </ul>

【붙임】

업적보상비 지급 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지급일	대상	지급액	비고
1	2018.03.30	AE	3,000,000	소득세 원천징수
2	2018.06.29	AE	2,000,000	
소계			<b>5,000,000</b>	
1	2019.06.28	-	2,233,330	소득세 원천징수
2	2019.09.30	-	3,000,000	
3	2019.12.31	-	2,000,000	
4	2020.03.31	-	3,000,000	
5	2020.06.30	-	2,000,000	
6	2020.09.29	-	3,000,000	
7	2020.12.30	-	2,000,000	
8	2021.03.31	-	3,000,000	
9	2021.06.30	-	2,000,000	
10	2021.09.30	-	2,000,000	
소계			<b>24,233,330</b>	
총계			<b>29,233,330</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p><b>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미이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2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수입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며 수입징수원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li>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2018. 12. 13. AF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상소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법원 2018****)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붙임】 “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현황”과 같이 2018. 7.부터 2021. 3.까지 위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등 총 9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2명)</li> <li>○ 통보</li> <li>-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법원2018****)’ 소송 등 9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 바람</li> </ul>

【붙임】

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 번	사건명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소송 내역	판결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1	제임용거부 처분 취소 (****법원2018****)	AF	서울대학교 총장	사건(****법원 2018****)의 상소심	원고 패 (2018.12.13.)	15,400
2	-	-	-	-	원고 패 (2018.8.16.)	19,800
3	-	-	-	-	원고 패 (2018.12.13.)	14,300
4	-	-	-	-	원고 패 (2019.5.10.)	14,300
5	-	-	-	-	원고 승 (2018.7.19.)	20,900
6	-	-	-	-	원고 패 (2020.10.21.)	6,600
7	-	-	-	-	원고 패 (2021.3.25.)	6,600
8	-	-	-	-	원고 패 (2021.2.24.)	8,800
9	-	-	-	-	원고 승 (2020.9.24.)	55,000
합계						161,7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28</b>	<p><b>교수학사협의회 행사비 집행 부적정</b></p> <p>○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데도,</p> <p>-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6. 2. 18.(목)부터 2016. 2. 19.(금)까지 강원도 평창 소재 ▽▽에서 교직원 318명(교원 148명, 직원 170명) 외 교원 가족 94명까지 동반하여 교수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52,825,270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교수학사협의회 개최 현황”과 같이 2016. 2.부터 2020. 1.까지 위 ◆대학 등 5개 단과대학에서 총 14회에 걸쳐 교외에서 개최된 학사협의회에 교직원 합계 1,718명(누적인원 기준 / 교원 1,072명, 직원 646명) 외 교원 가족 합계 522명(누적인원 기준) 동반하여 교수학사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합계 624,425,124원을 법인회계 등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위 행사비 합계 624,425,124원 중 숙박비·별도 부담액 등을 고려하면 교원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비는 합계 68,991,703원으로 추산</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학교행사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p>

【붙임】

교수학사협의회 개최 현황

(금액단위 : 원)

연 번	단과 대학	기간	장소	교원	교원 동반 가족	직원	계	관련 회계	금액
1	◆	2016.2.18.(목)~2.19.(금)	강원도 평창 소재 ▽▽	148	94	170	412	법인	52,825,270
		2017.2.16.(목)~2.17.(금)	-	142	84	104	330	법인	66,732,104
		2018.2.8.(목)~2.9.(금)	-	153	64	100	317	법인	74,227,940
		2019.1.24.(목)~1.25.(금)	-	179	74	156	409	법인	70,377,570
		2020.1.30.(목)~1.31.(금)	-	150	58	75	283	법인	66,996,780
	소계(5회)				772	374	605	1,751	
2	-	2016.10.28.(금)~10.29.(토)	-	49	15	3	67	발전기금	20,245,630
3	-	2018.2.5.(월)~2.6.(화)	-	70	3	6	79	법인	28,707,130
4	-	2016.2.19.(금)~2.22.(월)	-	36	23	10	69	법인	66,155,000
		2017.2.20.(월)~2.21.(화)	-	29	29	4	62	법인	22,272,700
		2018.2.1.(목)~2.4.(일)	-	38	23	5	66	법인	81,515,000
		2019.2.14.(목)~2.15.(금)	-	34	23	7	64	법인	21,334,000
	소계(4회)				137	98	26	261	
5	-	2016.12.16.(금)~12.17.(토)	-	16	19	2	37	발전기금	7,783,000
		2017.06.19.(월)~6.20.(화)	-	12	10	2	24	발전기금	6,630,000
		2018.12.26.(수)~12.29.(토)	-	16	3	2	21	산학협력단	38,623,000
	소계(3회)				44	32	6	82	
<b>합계(14회)</b>				<b>1,072</b>	<b>522</b>	<b>646</b>	<b>2,240</b>		<b>624,425,124</b>

【참조】

교원 동반 가족 지원비 추산 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단과대학	행사기간	장소	참석인원				관련 경비		산액		비고
				교원	교원 동반 가족 (A)	직원	계 (B)	항목	금액 (C)	(D)=(C)/(B)	동반가족 지원 추산액 (A)*(D)	
1	◆	2016.2.18.(목)~ 2.19.(금)	강원도 평창 소재 ▽▽	148	94	170	412	숙박비	27,093,000	65,760	6,181,440	숙박비 외 동반 가족 제반 비용 개별 별도부담
		2017.2.16.(목)~ 2.17.(금)	-	142	84	104	330	숙박비	23,257,000	70,476	5,919,984	
		2018.2.8.(목)~ 2.9.(금)	-	153	64	100	317	숙박비	27,100,000	85,489	5,471,296	
		2019.1.24.(목)~ 1.25.(금)	-	179	74	156	409	숙박비	28,933,000	70,741	5,234,834	
		2020.1.30(목)~ 1.31.(금)	-	150	58	75	283	숙박비	24,572,000	86,827	5,035,966	
		소계(5회)				772	374	605	1,751		130,955,000	
2	-	2016.10.28.(금)~ 10.29.(토)	-	49	15	3	67	교통비	4,252,500	63,470	952,050	전세버스 28인승 3대
								숙박비	10,997,000	164,134	2,462,010	***(6인~8인) 20실, **(5인~7인) 13실
								식비	3,549,000	52,970	794,550	10월 28일 중식·석식, 10월 29일 중식
								보험료	205,800	3,072	46,080	여행자 보험 67명
								기타	498,340	7,438	111,570	간식 등
								소계(1회)				
3	-	2018.2.5.(월)~ 2.6. (화)	-	70	3	6	79	교통비	3,600,000	45,570	136,710	버스임대
								숙박비	7,989,000	101,127	303,381	조식 등 포함
								식비	8,726,000	110,456	331,368	2월 5일 중식·석식, 2월 6일 중식
								기타	4,636,340	58,688	176,064	문화체험 입장료, 기념품 구입 등
								소계(1회)				

연 번	단과대학	행사기간	장소	참석인원				관련 경비		산액		비고
				교원	교원 동반 가족 (A)	직원	계 (B)	항목	금액 (C)	(D)=(C)/(B)	동반가족 지원 추산액 (A)*(D)	
4	-	2016.2.19.(금)~ 2.22. (월)	-	36	23	10	69	숙박비 등	66,155,000	-	9,878,333	교원가족 인당 100만원 개별 별도 부담 고려
		2017.2.20.(월)~ 2.21.(화)	-	29	29	4	62	숙박비 등	22,272,700	-	8,116,492	교원가족 인당 12만원 개별 별도 부담 고려
		2018.2.1.(목)~ 2.4.(일)	-	38	23	5	66	숙박비 등	81,515,000	-	14,397,686	교원가족 인당 120만원 개별 별도 부담 고려
		2019.2.14.(목)~ 2.15.(금)	-	34	23	7	64	숙박비 등	21,334,000	333,344	7,666,912	
		소계(4회)				137	98	26	261		191,276,700	
5	-	2016.12.16.(금)~ 12.17.(토)	-	16	19	2	37	-	-	-	-	교원가족 관련 비용은 전액 개별 별도 부담
		2017.06.19.(월)~ 6.20.(화)	-	12	10	2	24	-	-	-	-	
		2018.12.26.(수)~ 12.29.(토)	-	16	3	2	21	-	-	-	-	
		소계(3회)				44	32	6	82	-	-	
<b>합계(14회)</b>				<b>1,072</b>	<b>522</b>	<b>646</b>	<b>2,240</b>				<b>68,991,703</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b>29</b>	<p><b>계약체결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21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에 부쳐야 하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18. 10. 4. 일반경쟁 계약 대상인 ‘&amp;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건을 &lt;&lt;와 수의계약 (계약금액 : 236,500천원) 체결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2.부터 2019. 12.까지 위 ‘&amp;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 등 일반경쟁 입찰대상계약 총 5건, 합계 436,243천원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li> </ul>	<p>○ 경고(4명)</p>

【붙임】

일반경쟁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건명	소관부서	계약구분	계약일자	계약대상자		주요거래품목	계약금액
					상호명	업종		
1	& 체력단련센터 운동기구 구매	& (법인회계)	물품	2018.10.4	<<	스포츠용품 및 헬스기기 등	헬스기기 등	236,500
2	-	-	용역	2018.3.1.	-	소독업	소독	49,941
3	-	-	용역	2019.3.1.	-	소독업	소독	49,941
4	-	-	용역	2020.3.1.	-	소독업	소독	49,941
5	-	-	용역	2021.3.19	-	방제	방제	49,920
합 계								436,24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b>30</b>	<p><b>일상감사 미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감사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 감사는 법인회계 예산 집행 시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인쇄) 및 그 밖에 계약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되,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전자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19. 10. 10. 일상감사 대상인 “ㄱ 수리 계약(계약금액 78,229천원)”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일상감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9. 10월부터 2021. 4월까지 일상감사 대상인 위 “ㄱ 수리 계약” 등 총 54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통보</li> <li>- 일상감사 대상인 용역 건 등을 수의계약 할 때에는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바람.</li> </ul>

【붙임】

일상감사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 업 명	구분	부 서	계약업체	계약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1	2019	ㄱ 수리	물품	-	◇◇	78,229	2019-10-10	수의
2	2019	-	물품	-	-	61,600	2019-10-17	수의
3	2019	-	물품	-	-	241,547	2019-12-10	수의
4	2019	-	물품	-	-	76,358	2019-12-17	수의
5	2019	-	물품	-	-	196,273	2019-12-19	수의
6	2019	-	물품	-	-	97,614	2019-12-23	수의
7	2019	-	물품	-	-	78,427	2019-12-23	수의
8	2019	-	물품	-	-	74,219	2019-12-26	수의
9	2019	-	물품	-	-	195,272	2019-12-27	수의
10	2019	-	물품	-	-	217,046	2019-12-27	수의
11	2019	-	물품	-	-	95,186	2019-12-27	수의
12	2019	-	물품	-	-	154,496	2020-01-06	수의
13	2019	-	물품	-	-	186,085	2020-01-06	수의
14	2019	-	물품	-	-	1,169,552	2020-01-06	수의
15	2019	-	물품	-	-	78,520	2020-01-13	수의
16	2019	-	물품	-	-	169,290	2020-01-14	수의
17	2019	-	물품	-	-	2,450,259	2020-01-16	수의
18	2019	-	물품	-	-	58,030	2020-02-02	수의
19	2019	-	물품	-	-	234,687	2020-02-13	수의
20	2019	-	물품	-	-	56,430	2020-02-18	수의
21	2019	-	물품	-	-	101,912	2020-02-21	수의
22	2019	-	물품	-	-	80,799	2020-02-21	수의
23	2019	-	물품	-	-	386,663	2020-02-24	수의
24	2019	-	물품	-	-	527,887	2020-02-24	수의
25	2020	-	물품	-	-	2,103,616	2020-03-27	수의
26	2020	-	물품	-	-	56,430	2020-09-07	수의

연번	연도	사 업 명	구분	부 서	계약업체	계약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27	2020	-	물품	-	-	95,042	2020-12-01	수의
28	2020	-	물품	-	-	309,153	2021-01-01	수의
29	2020	-	물품	-	-	175,472	2021-01-01	수의
30	2020	-	물품	-	-	187,760	2021-01-01	수의
31	2020	-	물품	-	-	67,999	2021-01-01	수의
32	2020	-	물품	-	-	80,296	2021-01-01	수의
33	2020	-	물품	-	-	58,462	2021-01-01	수의
34	2020	-	물품	-	-	151,362	2021-01-01	수의
35	2020	-	물품	-	-	905,987	2021-01-01	수의
36	2020	-	물품	-	-	64,461	2021-01-01	수의
37	2020	-	물품	-	-	551,457	2021-01-01	수의
38	2020	-	물품	-	-	99,571	2021-01-01	수의
39	2020	-	물품	-	-	184,828	2021-01-01	수의
40	2020	-	물품	-	-	123,495	2021-01-01	수의
41	2020	-	물품	-	-	162,051	2021-01-01	수의
42	2020	-	물품	-	-	68,229	2021-01-01	수의
43	2020	-	물품	-	-	160,588	2021-01-01	수의
44	2020	-	물품	-	-	142,795	2021-01-01	수의
45	2020	-	물품	-	-	148,262	2021-01-01	수의
46	2020	-	물품	-	-	74,126	2021-01-01	수의
47	2020	-	물품	-	-	1,021,531	2021-01-01	수의
48	2020	-	물품	-	-	68,586	2021-01-01	수의
49	2020	-	물품	-	-	1,780,311	2021-01-01	수의
50	2020	-	물품	-	-	58,408	2021-01-01	수의
51	2020	-	물품	-	-	60,940	2021-01-29	수의
52	2020	-	물품	-	-	56,246	2021-02-02	수의
53	2020	-	물품	-	-	166,213	2021-02-10	수의
54	2021	-	물품	-	-	87,541	2021-04-07	수의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p><b>축·조의금 및 격려금 집행 계정과목 부적정</b></p> <p>○ 「'18.~'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축·조의금 및 격려금은 “기타운영비”에 편성·집행하도록 되어있고, 「'18.~'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과 그 하위 규칙·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대학은 2018. 3. 30. “2018년도 춘계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300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붙임】 “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대학 등 3개 부서는 위 “2018년도 춘계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축·조의금 및 격려금 합계 4,324천원을 기타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축·조의금 등을 계정과목에 맞게 집행하기 바람</p>

【붙임】

축·조의금 및 격려금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예산부서	지출일	지급건명	지출액
1	2018	◆대학	2018-03-30	2018년도 춘계 ◆대학장배 정례 테니스대회 개최에 따른 학장격려금 지급	300
2	2018	◆대학	2018-04-10	-	300
3	2018	◆대학	2018-04-12	-	500
4	2018	◆대학	2018-05-24	-	300
5	2018	◆대학	2018-06-08	-	300
6	2018	◆대학	2018-09-21	-	300
7	2018	◆대학	2018-09-27	-	300
8	2018	◆대학	2018-10-11	-	300
9	2018	◆대학	2018-10-16	-	500
10	2018	◆대학	2018-10-18	-	500
11	2020	◆대학	2020-06-05	-	300
12	2018	-	2018-08-01	-	100
13	2020	-	2021-01-19	-	80
14	2020	-	2021-01-19	-	78
15	2021	-	2021-07-06	-	98
16	2021	-	2021-07-16	-	68
합계		3개 부서			4,32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2</b>	<p><b>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미비 등</b></p> <p>○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3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재무와 회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의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18.~'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18.~'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과 그 하위 규칙·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 법규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상대방이 2인 이상의 경우에 참석자 명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지급</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업무추진비 및 교육 지원비 등 소모성 경비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및 분할 결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할 수 있고,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2011.11.28.) 이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지원비, 회의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집행기준 또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세출예산집행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용 목적 등만 명시되어있고, 1인당 집행 기준 등은 명시되어있지 않음</p> <p>- 그 결과, ★학부에서 2018. 5. 29. 실시한 ‘BK21사업 관련 산업체 및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자 : AG 등 15명)와 ‘2018년도 ★학부 발전협의회 간담회’(참석자 : AG 등 15명)의 참석자 전부가 중복되는데도 회의인원을 각각 산정하여 21:33:08 산학협력단회계(회의비)로 450,000원, 21:33:32 법인회계(교육지원비)로 420,000원, 합계 870,000원이 집행(사용처 : ♡♡, 1인당 : 58,000원) 되게 하는 등 【붙임】 “회의 식대 등 소모성경비 분할결제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위 ★학부 등 19개 부서에서 총 44차례에 걸쳐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대 회의 참석자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데도 회의인원을 각각 산정, 산학협력단회계 및 법인회계로 분할결제하여 합계 31,476,800원이 집행 되게 한 사실이 있음</p>	

【붙임】

회의 식대 등 소모성경비 분할결제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1	★학부	BK21사업 관련 산업체 및 자문위원회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교내) AG, -(15명)		♡♡	2018.05.29	21:33:08	450,000	870,000	15	58,000
		2018년도 ****공학부 발전협의회 간담회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교내) AG, -(15명)				21:33:32	420,000			
2	-	연구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07.12	21:18:30	445,000	885,000	확인 불가	-
		1학기 종강에 따른 ****위원회 간담회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18:46	440,000			
3	-	****학부 행사 및 일정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07.18	20:12:42	390,000	549,000	12	45,750
		****전공 2018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정 건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13:07	159,000			
4	-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간담회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07.23	20:20:50	509,650	1,119,650	22	50,893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간담회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19:58	610,000			
5	-	****대 집행부 간담회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08.09	21:20:07	470,000	920,000	확인 불가	-
		학과 교수, 직원 업무협의 간담회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19:45	450,000			
6	-	심포지엄 회의 및 ****과제 중간결산 보고, 2차 운영회의 사전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10.05	19:36:19	319,000	1,009,000	22	45,864
		****교실 ****연구소 제10차 심포지움	법 인 회 계	회 의 비	-			19:35:59	690,000			
7	-	학부 운영에 관한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18.10.08	20:14:09	775,000	1,550,000	확인 불가	-
		교수 승진 및 신규임용 환영식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13:12	775,000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8	-	***** 연구 관련 회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8.11.15	13:36:01	240,000	690,000	확인불가	-
		학과 교수 및 명예교수 간담회	법 인 회계	교육지원비	-			13:35:40	450,000			
9	-	2018학년도 11월 **** 회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8.11.21	20:48:53	1,000,000	2,972,000	35	84,914
		**** 회의 간담회	법 인 회계	업무추진비	-			20:49:26	1,000,000			
		2018학년도 11월 **** 회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20:49:45	972,000			
10	-	****센터 회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8.11.27	20:52:09	220,000	720,000	확인불가	-
		**** 포럼 관련 협의	법 인 회계	기타운영비	-			20:51:42	500,000			
11	-	****대학교 ****센터 협력 방안 모색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8.12.03	21:10:20	300,000	815,000	확인불가	-
		**** 추진현황 보고 회의	법 인 회계	업무추진비	-			21:09:47	315,000			
		**** 설립 및 **** 리뉴얼 계획 논의	법 인 회계	회 의 비	-			21:10:41	200,000			
12	-	**** 혁신방안 논의비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9.04.11	20:14:48	320,000	520,000	확인불가	-
		****시 AI 사업 관련 간담회 준비 논의	법 인 회계	회 의 비	-			20:15:11	200,000			
13	-	2019년 종합평가 계획 및 BK21 후속사업 진행에 대한 논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9.06.18	22:06:49	630,000	1,260,000	31	40,645
		****학부 교원, 직원 학부 발전 방안 간담회	법 인 회계	교육지원비	-			22:06:14	630,000			
14	-	****대학원 ****동 공간 구성 및 설계 논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9.08.09	20:34:26	207,000	487,000	11	44,273
		**** 공간 구성·설계 논의	법 인 회계	업무추진비	-			20:34:05	280,000			
15	-	BK보고서 작성 관련 3차 회의	산학협력단 회계	회 의 비	-	-	2019.08.19	19:59:02	600,000	852,150	21	40,579
		****사업단 2019년도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회의	법 인 회계	교육지원비	-			19:59:21	252,150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16	-	학부 교수 및 직원 간담회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08.30	20:28:26	790,000	1,580,000	27	58,519
		**** 교수 송별연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28:12	790,000			
17	-	BK 4차년도 준비 관련 회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0.02	21:20:41	337,000	677,000	12	56,417
		BK보고서 및 오픈랩 행사 관련 업무협의 회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20:29	340,000			
18	-	학부 운영 방안 논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0.07	20:16:08	1,005,500	2,011,000	35	57,457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승진교수 축하연 개최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14:56	1,005,500			
19	-	2019학년도 2학기 사업단 향후 일정 논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0.10	21:12:45	420,000	524,000	확인 불가	-
		[****] BK21종합보고서 제출 관계자 간담회 경비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13:16	104,000			
20	-	**** 운영 관련 회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2.02	20:38:00	314,000	614,000	8	76,750
		**** 전임원장님들과 **** 관련 회의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0:37:48	300,000			
21	-	2019년도 결산보고 및 예산논의, 2020년 심포지움 논의 등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2.20	20:41:24	520,000	1,015,000	21	48,333
		2019 ****과정	법 인 회 계	회 의 비	-			20:40:54	495,000			
22	-	****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19.12.30	21:50:41	280,000	430,000	7	61,429
		2020년도 ****토론회 개최 준비 회의	법 인 회 계	연구개발비	-			21:49:53	150,000			
23	-	2020 ****협의회 회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20.01.29	20:54:25	320,000	920,000	21	43,810
		2020년도 ****협의회 행사비	법 인 회 계	행 사 비	-			20:54:05	600,000			
24	-	****장 퇴직에 따른 준비사항 논의	산학협력단 회	회 의 비	-	-	2020.06.09	20:36:41	398,000	758,000	확인 불가	-
		대형 연구과제 유치 지원 사업 시행계획 관련 논의	법 인 회 계	회 의 비	-			20:32:04	360,000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25	-	연구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0.06.10	20:46:03	470,000	975,000	16	60,938
		****센터 연구지원 관련 과제에 대한 국가 경쟁력과의 연계성 및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	법 인 회 계	회 의 비	-			20:45:32	175,000			
		2020년도 1학기 종강에 따른 학부 현안 등 논의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0:46:35	330,000			
26	-	**** 연구분야 기획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0.10.27	21:00:08	600,000	1,088,000	23	47,304
		****학부 규정 및 운영지침 변경 관련 간담회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58:58	488,000			
27	-	****추진단회의 관련 사후 업무추진방안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0.11.10	21:02:37	325,000	650,000	확인 불가	-
		4단계 BK21사업 추진 관련 유관부서 협조 회의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1:03:05	325,000			
28	-	****사업단 Buy-out 제도 향후 업무 추진 방안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0.11.18	20:43:07	400,000	602,000	확인 불가	-
		****위원회 개선 방향 관련 검토 회의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0:43:29	202,000			
29	-	****병원과의 연구협력 및 연구소 발전 방향 논의 등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1.06	20:06:45	120,000	240,000	확인 불가	-
		****회의:2021학년도****위원회준비논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07:32	120,000			
30	-	**** 작성 관련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3.23	20:08:10	100,000	200,000	4	50,000
		학부 운영안 및 환경개선 논의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0:07:37	100,000			
31	-	BK박사후 연구원 임용 관련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3.29	19:57:12	110,000	220,000	5	44,000
		학부 운영 방안 및 연구 수행 관련 논의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19:57:45	110,000			
32	-	**** 지원 관련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3.31	20:18:52	100,000	200,000	4	50,000
		****창의공간 운영 회의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0:17:28	100,000			
33	-	**** 우수사례 소개 제출 관련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4.02	19:56:27	120,000	240,000	5	48,000
		사업 추진 방향 의견 수립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19:55:15	120,000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34	-	국립대학교 병원 산학협력단 설치 관련 논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5.07	13:00:13	120,000	222,000	3	74,000
		****과 운영비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13:00:26	102,000			
35	-	****캠퍼스 자문 과제 수행 여부 관련 논의 등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5.20	21:22:12	120,000	187,000	3	62,333
		**** 담당교수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21:26:28	67,000			
36	-	BK1차년도 정산 관련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5.20	21:35:19	120,000	360,000	7	51,429
		학부 미래성장 동력 검토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1:30:33	120,000			
		****학부 창의공간 기부 전달식 관련 회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34:35	120,000			
37	-	BK ****위원회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5.24	20:46:31	120,000	360,000	8	45,000
		****학부 2021학년도 2학기 교과과정 회의, 학부실협 교과목 개설 회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0:46:51	120,000			
		연구 분야별 미래 성장동력 탐색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0:47:08	120,000			
38	-	과제 협력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03	20:13:04	89,000	239,000	3	79,667
		**** 업무협의 : **** 18기 1학기 종강 및 체육행사, **** 총동창회 행사 계획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0:12:48	150,000			
39	-	[****연구단]유기 및 무기 화학의 신규 촉매들의 구조와 반응 성능에 대한 회의 진행 예정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03	20:31:05	150,000	270,000	4	67,500
		2021-1학기 ****세미나	법 인 회 계	행 사 비	-			20:30:26	120,000			
40	-	****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07	22:02:48	120,000	360,000	7	51,429
		****학부 창의공간 장비실 운영 관련 회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2:01:47	120,000			
		연구 기획 세부사항 검토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2:02:06	120,000			
41	-	****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08	21:05:25	120,000	360,000	7	51,429
		****학부 대학원 운영 규정 회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06:25	120,000			
		교육프로그램 발전 방향 논의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1:06:45	120,000			
42	-	****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09	21:02:45	120,000	360,000	7	51,429
		**** 미래 연구방향 토의	법 인 회 계	기관운영경비	-			21:03:19	120,000			
		****학부 학부장 변경에 따른 학부 운영 방안 논의	법 인 회 계	교육지원비	-			21:03:35	120,000			

연번	사용부서	사용 목적	회계명	지출과목	참 석 자	사용장소	사용일자	사용시간	사용금액	총사용액	참석인원	1인당 사용액
43	-	과제 협력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16	21:45:35	206,000	356,000	7	50,857
		**** 업무협의	법 인 회 계	업무추진비	-			21:45:03	150,000			
44	-	신규 연구물품 사용 및 관리 관련 회의	산학협력단 회 계	회 의 비	-	-	2021.06.18	21:17:07	120,000	240,000	4	60,000
		대학원생 간담회	법 인 회 계	기타학생경비	-			2021.06.18	21:16:32			
합 계			산학협력단회계						16,049,150	31,476,800		
			법 인 회 계						15,427,65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p><b>▣ 도록 허위 간행 부당</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AH는 2020. 1.경(날짜 미상) “ㄷ” 도록 1,000부를 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해당 사업 예산 5,236천원으로 동 도록을 500부 간행), 2020. 1. 28. ○에 “ㅎ” 도록 500부를 간행(9,493천원, ▣ 운영비)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는 위 “ㅎ” 도록이 아닌 “ㄷ” 도록이 간행되었는데도, 2020. 2. 12. “ㅎ” 도록 500부가 정상적으로 간행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9,493천원*이 집행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p> <p>* ‘표’ 예산과 ‘▣ 운영비’ 예산으로 합계 14,729천원이 집행되었으나,</p>	<p>○ 경징계(2명)</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center;">&lt;별도조치&gt;</p> <p>○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동일한 도록에 대한 다른 업체의 견적은 8,800천원~10,560천원으로 최소 4,169천원에서 최대 5,929천원의 차이 발생</p> <p>※ 계약업체인 ♣♣에는 “ㄷ” 도록만 1,000부를 간행하되, 2종의 도록을 각 500부씩 간행하는 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p>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b>34</b>	<p><b>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 교원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 사례 통보(☎☎-1945, 2013.7.12.)”에서 대학 교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직무회피 여부 검토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62, '18.1.11)”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일부개정 안내(서울대 ◆-1131('18.4.17)”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AI는 2018. 6. 1. ‘기’에 관한 연구(연구기간 : '18.6.1.~'20.2.29.)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 AJ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37,623천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붙임】 “연구 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8. 6월부터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AI 등 교원 19명이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연구과제 총 32건에 대하여 배우자 등 연구책임자 가족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269,218천원을 연구비에서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19명)</li> <li>○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연구 참여 미신고 등 연구 과제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람</li> </ul> </li> </ul>

【붙임】

연구책임자 가족의 연구과제 참여 미신고 현황

(단위 : 천원)

순	연구책임자			교수수행 연구 과제명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지원 기관	지원액	특수관계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계	소속	직급	성명	인건비 지급액
1	-	-	AI	기타에 관한 연구	2018-06-01	2019-02-28	-	37,500	배우자	-	-	AJ	16,120
					2019-03-01	2020-02-29	-	50,000	배우자	-	-	-	21,503
2	-	-	-	-	2018-07-06	2019-02-05	-	22,727	배우자	-	-	-	1,000
				-	2018-10-18	2019-02-14	-	44,545	배우자	-	-	-	4,083
3	-	-	-	-	2019-01-01	2019-12-31	-	345,824	배우자	-	-	-	5,700
				-	2020-01-01	2020-12-31	-	200,000	배우자	-	-	-	8,400
				-	2021-01-01	2021-12-31	-	200,000	배우자	-	-	-	6,000
				-	2019-05-23	2019-11-18	-	39,800	배우자	-	-	-	1,332
				-	2020-03-05	2021-08-19	-	750,000	배우자	-	-	-	1,500
				-	2020-04-01	2020-09-28	-	99,500	배우자	-	-	-	3,566
				-	2020-05-01	2020-12-31	-	128,000	배우자	-	-	-	1,200
				-	2021-01-01	2021-12-31	-	300,000	배우자	-	-	-	4,800
4	-	-	-	-	2019-01-01	2019-12-31	-	450,000	배우자	-	-	-	2,010
				-	2020-01-01	2020-12-31	-	450,000	배우자	-	-	-	6,500
5	-	-	-	-	2019-03-01	2019-05-31	-	75,750	배우자	-	-	-	15,850
				-	2019-06-01	2020-05-31	-	50,000	배우자	-	-	-	4,600
6	-	-	-	-	2019-03-01	2020-02-28	-	90,000	배우자	-	-	-	4,600
				-	2020-03-01	2021-02-28	-	80,000	배우자	-	-	-	8,820
7	-	-	-	-	2019-07-01	2020-12-31	-	200,000	배우자	-	-	-	-
8	-	-	-	-	2019-	2021-	-	70,000	배우자	-	-	-	1,878

순	연구책임자			교수수행 연구 과제명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지원 기관	지원액	특수관계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계	소속	직급	성명	인건비 지급액
					08-01	07-31							
9	-	-	-	-	2019-03-01	2023-02-28	-	400,000	배우자	-	-	-	32,700
10	-	-	-	-	2019-06-14	2020-01-10	-	32,618	배우자	-	-	-	10,358
				-	2020-07-15	2020-12-31	-	63,636	배우자	-	-	-	11,172
				-	2020-04-16	2020-10-13	-	57,175	배우자	-	-	-	12,208
				-	2020-12-01	2021-05-31	-	50,000	배우자	-	-	-	2,974
				-	2021-06-01	2022-03-31	-	101,666	배우자	-	-	-	-
11	-	-	-	-	2019-07-18	2019-12-17	-	72,727	배우자	-	-	-	1,973
12	-	-	-	-	2019-01-01	2019-12-31	-	475,000	배우자	-	-	-	3,000
				-	2020-01-01	2020-12-31	-	300,000	배우자	-	-	-	3,300
				-	2021-01-01	2022-03-31	-	300,000	배우자	-	-	-	-
13	-	-	-	-	2020-04-29	2022-12-31	-	-	배우자	-	-	-	-
14	-	-	-	-	2019-03-01	2020-02-29	-	168,796	배우자	-	-	-	7,560
				-	2019-03-15	2019-12-15	-	92,000	배우자	-	-	-	34,020
				-	2020-01-01	2020-12-31	-	41,868	배우자	-	-	-	-
15	-	-	-	-	2020-06-01	2020-09-18	-	70,500	배우자	-	-	-	6,606
16	-	-	-	-	2020-09-01	2021-02-28	-	25,000	배우자	-	-	-	4,506
				-	2021-	2022-	-	50,000	배우자	-	-	-	12,000

순	연구책임자			교수수행 연구 과제명	연구 시작	연구 종료	지원 기관	지원액	특수관계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관계	소속	직급	성명	인건비 지급액
					03-01	02-28							
17	-	-	-	-	2021-01-01	2021-12-31	-	250,000	배우자	-	-	-	6,599
18	-	-	-	-	2021-03-01	2021-12-31	-	500,000	배우자	-	-	-	-
19	-	-	-	-	2021-06-01	2022-02-28	-	52,500	배우자	-	-	-	-
계									269,218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5	<p><b>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연구과제추진비 사용방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회의비 집행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목적 및 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은 불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AK는 2018. 8. 30. “ㄷ(지원기관: ●●, 연구비 50백만원, 연구기간: 2018. 7. 10. ~ 2018. 12. 31)”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8. 8. 30. ‘■■■’에서 내부연구원만으로 식사 후 식대 93,000원을 회의비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붙임】 “회의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8. 8월부터 2021.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AK 등 29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연구원들과 회의 후 내부직원 식대를 회의비로 연구비 법인카드 49건, 합계 2,878,58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29명)</li> <li>○ 시정(회수)</li> <li>- 부적정하게 집행된 회의비 2,878,580원을 각 연구책임자에게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별도조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ul>

【붙임】

회의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원)

순	연구 책임자	연차과제명	지원부처	연구기간	회의명 및 목적	회의 일자	회의시 간	회의 요일	참여 인력	내부참석자	외부 참석 자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사용 요일	사용처	사용액
1	AK	ㄷ	●●	2018-07-10 2018-12-31	-	2018-08-30	09:00-11:00	목	5	AK, -	0	2018-08-30	12:48	목	■■	93,000
2	-	-	-	2018-03-01 2019-02-28	-	2018-07-11	17:00-19:00	수	2	-	0	2018-07-11	20:50	수	-	60,000
3	-	-	-	2018-03-01 2019-02-28	-	2018-11-27	11:00-12:40	화	2	-	0	2018-11-27	12:38	화	-	26,000
		-	-	2021-03-01 2022-02-28	-	2021-04-16	11:00-12:40	금	2	-	0	2021-04-16	12:39	금	-	45,000
4	-	-	-	2018-03-01 2019-07-31	-	2019-06-17	15:00-16:30	월	4	-	0	2019-06-17	16:21	월	-	13,100
					-	2019-07-16	19:00-20:00	화	5	-	0	2019-07-16	20:24	화	-	54,000
5	-	-	-	2018-03-01 2019-02-28	-	2018-07-31	10:00-12:00	화	2	-	0	2018-07-31	12:01	화	-	15,400
					-	2018-08-02	16:00-18:00	목	2	-	0	2018-08-02	18:04	목	-	8,300
					-	2018-08-03	16:00-18:00	금	2	-	0	2018-08-03	18:03	금	-	8,600
					-	2018-08-27	17:00-20:00	월	3	-	0	2018-08-27	18:28	월	-	47,600
					-	2018-09-21	11:00-13:00	금	2	-	0	2018-09-21	13:16	금	-	15,600
					-	2018-09-21	20:00-21:30	금	2	-	0	2018-09-21	21:09	금	-	15,000

순	연구 책임자	연차과제명	지원부처	연구기간	회의명 및 목적	회의 일자	회의시 간	회의 요일	참여 인력	내부참석자	외부 참석 자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사용 요일	사용처	사용액
6	-	-	-	2018-07-01 2019-04-30	-	2018-10-31	12:00-13:00	수	4	-	0	2018-10-31	14:13	수	-	108,000
					-	2019-03-04	11:00-13:00	월	2	-	0	2019-03-04	13:26	월	-	52,000
				-	-	2020-03-01 2020-08-31	-	2020-04-16	12:00-13:20	목	6	-	0	2020-04-16	13:14	목
7	-	-	-	2018-03-05 2018-12-31	-	2018-12-07	10:00-12:00	금	5	-	0	2018-12-07	13:17	금	-	46,000
					-	2018-12-12	09:00-11:00	수	4	-	0	2018-12-12	12:13	수	-	46,000
8	-	-	-	2018-03-01 2019-02-28	-	2018-05-14	16:00-18:30	월	6	-	0	2018-05-14	18:39:11	월	-	210,000
9	-	-	-	2018-07-01 2018-12-31	-	2018-10-04	17:30-20:00	목	9	-	0	2018-10-04	17:38	목	-	269,000
10	-	-	-	2018-06-01 2019-02-28	-	2018-09-28	14:00-17:00	금	2	-	0	2018-09-28	17:44	금	-	50,000
					-	2018-11-05	13:20-15:00	월	2	-	0	2018-11-05	17:05	월	-	23,500
11	-	-	-	2018-06-01 2019-05-31	-	2018-11-29	17:30-18:50	목	8	-	0	2018-11-29	18:54	목	-	239,000

순	연구 책임자	연차과제명	지원부처	연구기간	회의명 및 목적	회의 일자	회의시 간	회의 요일	참여 인력	내부참석자	외부 참석 자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사용 요일	사용처	사용액
12	-	-	-	2018-03-01 2019-02-28	-	2018- 07-16	09:30- 11:00	월	2	-	0	2018- 07-16	10:53	월	-	8,320
13	-	-	-	2018-04-01 2019-02-28	-	2018- 04-12	11:00- 12:10	목	2	-	0	2018- 04-12	12:14	목	-	26,000
14	-	-	-	2018-02-01 2019-01-31	-	2018- 08-07	12:00- 12:50	화	3	-	0	2018- 08-07	12:49	화	-	35,100
15	-	-	-	2018-03-01 2019-02-28	-	2019- 02-25	15:00- 17:00	월	2	-	0	2019- 02-25	15:47	월	-	15,040
16	-	-	-	2018-03-01 2019-02-28	-	2018- 03-13	19:00- 21:00	화	2	-	0	2018- 03-13	20:09	화	-	17,100
					-	2018- 05-28	19:00- 21:00	월	2	-	0	2018- 05-28	19:30	월	-	26,900
					-	2018- 07-10	12:00- 14:00	화	3	-	0	2018- 07-10	12:07	화	-	29,000
					-	2018- 10-05	18:00- 20:00	금	2	-	0	2018- 10-05	18:53	금	-	21,820
					-	2018- 11-21	18:00- 19:30	수	3	-	0	2018- 11-21	18:15	수	-	36,000
17	-	-	-	2018-11-01 2019-10-31	-	2019- 01-16	17:30- 20:00	수	1	-	0	2019- 01-16	20:11	수	-	11,600
18	-	-	-	2018-03-30 2019-01-29	-	2018- 12-18	10:30- 12:00	화	2	-	0	2018- 12-18	12:11	화	-	16,400
					-	2018- 12-27	10:30- 12:30	목	2	-	0	2018- 12-27	12:31	목	-	14,000
					-	2019- 01-07	11:00- 13:00	월	2	-	0	2019- 01-07	12:38	월	-	9,300

순	연구 책임자	연차과제명	지원부처	연구기간	회의명 및 목적	회의 일자	회의시 간	회의 요일	참여 인력	내부참석자	외부 참석 자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사용 요일	사용처	사용액
					-	2019-01-07	11:00-13:00	월	2	-	0	2019-01-07	12:50	월	-	4,500
19	-	-	-	2019-03-01 2020-02-29	-	2020-01-06	12:00-13:30	월	3	-	0	2020-01-06	12:45	월	-	21,900
20	-	-	-	2019-01-01 2020-07-27	-	2019-04-09	12:26-13:26	화	4	-	0	2019-04-09	13:26	화	-	105,000
21	-	-	-	2020-01-01 2020-12-31	-	2020-06-09	10:00-13:00	화	3	-	0	2020-06-09	12:56	화	-	88,000
					-	2020-06-29	17:00-20:00	월	6	-	0	2020-06-29	19:44	월	-	196,300
22	-	-	-	2020-04-01 2020-12-31	-	2020-08-04	17:30-18:46	화	7	-	0	2020-08-04	18:46	화	-	210,000
23	-	-	-	2020-01-01 2020-12-31	-	2020-09-18	11:30-13:00	금	4	-	0	2020-09-18		금	-	22,000
		-	-	2020-01-01 2020-12-31	-	2020-01-15	11:00-12:00	수	7	-	0	2020-01-15		수	-	102,000
24	-	-	-	2020-03-01 2021-08-31	-	2021-03-26	10:50-12:20	금	4	-	0	2021-03-26	11:11	금	-	32,400
25	-	-	-	2020-03-01 2021-02-28	-	2020-12-10	17:30-18:30	목	2	-	0	2020-12-10	18:31	목	-	56,000
26	-	-	-	2020-03-01 2021-02-28	-	2020-09-12	09:00-10:00	토	2	-	0	2020-09-12	08:51	토	-	10,200

순	연구 책임자	연차과제명	지원부처	연구기간	회의명 및 목적	회의 일자	회의시 간	회의 요일	참여 인력	내부참석자	외부 참석 자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사용 요일	사용처	사용액
27	-	-	-	2020-03-01 2020-12-31	-	2020- 10-10	11:00- 13:00	토	4	-	0	2020- 10-10	10:13	토	-	41,600
28	-	-	-	2020-07-31 2020-12-31	-	2020- 11-25	09:30- 11:00	수	6	-	0	2020- 11-25	11:53	수	-	81,000
29	-	-	-	2021-01-01 2021-12-31	-	2021- 04-27	12:00- 13:00	화	2	-	0	2021- 04-27		화	-	43,000
합      계																2,878,58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6</b>	<p><b>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등 연구비 부당 집행</b></p> <p>○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 폐지)」 제12조 제5항 [별표2]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1.1. 시행)」 제20조 제1항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며,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물품의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21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15조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나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등의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외부 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p> <p><b>[학생연구원 인건비 일괄 관리 부당]</b> ————— ①</p> <p>- 서울대학교 AL은 2014. 11. ▲▲가 지원하는 ‘▣▣(연구비 : 91,100천원, 연구기간: 2014.11.1.~2017.10.31.)’ 과제책임자로</p>	<p>&lt;①,②,③번 관련&gt;</p> <p>○ 중징계(1명)</p> <p>&lt;①번 관련&gt;</p> <p>○ 시정(회수)</p> <p>-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여 공동관리한 AL으로부터 156,197,572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p>* (임의사용액 20,900,000원 + 통장잔액 135,297,572원)</p> <p>&lt;②,③번 관련&gt;</p> <p>○ 시정(회수)</p> <p>- 연구비에서 부당 집행한 노트북 구입 비용 9,460천원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회의비 140천원, 부당 집행된 연구비 총 합계 9,600천원을 AL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연구를 수행하면서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연구원 AM의 인건비 계좌(▶▶)를 AL이 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붙임1】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당 일괄 관리 현황”과 같이 2014. 11월 부터 2021. 10월 감사일까지 3개 연구과제(연구비 : 1,765,540천원, 연구기간 : 2014. 11. 1. ~2021. 8. 31.)를 수행하면서(참고), 위 AM 등 학생연구원 3명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인건비 합계 166,924,127원을 위 AL이 일괄 관리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총 10차례, 합계 20,900천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b>【연구과제 물품 허위 구입 연구비 집행 부당】 ----- ②</b></p> <p>- 또한, 위 AL은 ▼▼ 연구과제(과제명 : “쓰”, 연구책임자 : AL, 연구비 1,570,000천원, 연구기간 : 2019. 1. 1. ~ 2021. 12. 31.)를 수행하면서 【붙임2】 “연구과제 물품 허위 구입 현황”과 같이 2021. 7. 23.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1대, 9,460천원)을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업체 ◀◀에 외장HDD 등*의 소모품 성격의 연구 장비 및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4개의 거래내역서로 분리발급해주도록 요청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검수서로 연구비를 집행한 후 위 노트북을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등재·관리하지 않고 교수 개인이 소지하며 사용한 사실이 있음</p> <p>* 그래픽카드, CPU, 외장HDD, 기타 소모품 구입</p> <p><b>【회의비 부당집행】 ----- ③</b></p> <p>- 나아가, 위 AL은 ▼▼ 연구과제(과제명 : “쓰”, 연구책임자</p>	<p>○ <b>통보</b></p> <p>- 부당 집행된 연구비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당사용 및 공동 관리, 허위 물품 구입, 허위 참석자 회의비 집행 등)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람</p> <p><b>&lt;별도조치&gt;</b></p> <p>○ <b>고발</b></p> <p>○ <b>통보</b></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 AL, 연구비 : 1,570,000천원, 연구기간 : 2019. 1. 1. ~ 2021. 12. 31.)”를 수행하면서 【붙임3】 “회의비 부당 집행 현황”과 같이 2019. 12. 31. 내부연구원과 식사 후 외부 기관 소속 AN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식대 140,000원을 회의비 명목으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학생연구원 인건비 부담 일괄 관리 현황

(단위 : 원)

연번	연구원 성명			참여과제(지원기관)	지급금액			출금액		통장잔액 (*21.9.18현재)
	학과	과정	성명		지급기간	인건비	통장입금액 (세후)	산단반납액	교수 입의사용액	
1	-	-	AM	■■■ (▲▲ 이공분야기초 연구사업)	2015-03-18 ~2016-8-31	20,000,000	19,129,510	-	- (추정액)	19,129,510 (추정액)
				소 계		20,000,000	19,129,510			19,129,510
2	-	-	-	-	2015-11-01 ~2017-06-30	9,400,000	9,004,000		11,500,000	72,124,380
				-	2017-07-01 ~2021-08-31	54,454,355	50,352,675	401,755		
				-	2018-09-01 ~2021-02-28	26,100,000	23,935,200			
				-			734,260			
				소 계		89,954,355	84,026,135	401,755	11,500,000	
3	-	-	-	-	2015-11-01 ~2018-10-31	11,960,000	11,458,400	4,588,800	9,400,000	44,043,682
				-	2017-12-01 ~2021-08-31	43,765,000	40,319,800	5,736,000		
				-	2018-09-01 ~2021-08-31	12,360,000	11,335,680			
				-			654,602			
				소 계		68,085,000	63,768,482	10,324,800	9,400,000	
합 계						177,564,155	166,924,127	10,726,555	20,900,000*	135,297,572

\*AM 통장 출금  
금액 미포함

【붙임2】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현황

(단위 : 원)

연번	일시	지출증빙서상 거래내역		실제 구입 내역	금액	비고
		물품내역	금액			
1	2021.7.23	그래픽카드	2,950,000	노트북	9,460,000	쓰(▼▼) 300만원 초과 물품대장 미등재
2	2021.7.23	CPU	2,980,000			
3	2021.7.23	RAM	2,992,000			
4	2021.7.23	외장HDD HDD	538,000			
합 계					9,460,000	

【붙임3】

회의비 부당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회의비 집행 내역									허위 참석자	허위 집행액
	거래처명 (위치)	회의 일시	회의 시간	회의 장소	요일	집행 금액	승인 시간	내부 참석자	증빙서상 외부 참석자		
1	■■■	2019-12-31	11:00-14:00	서울대	화	140,000	13:38	-	AN	AN	140,000

【참고】 2014.11.01.~현재까지 과제현황 : 3건, 1,765,540천원

(단위: 원)

순번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사업	세부사업	연구시작일	연구종료일	연구비 (단위: 천원)	참여 연구원 (학생 인건비 대상)	지급금액			출금액		통장 잔액 ('21.9.18현재)	
									지급기간	인건비	통장입금액 (세후)	산단 반납액	교수 임의사용액		
1	ㄴ	▲▲ (●●)	이공분야 기초연구/중견 연구자지원 사업	도약연구 지원사업 (전략)	2014. 11.01.	2017. 10.31.	273,300,000	AM	2015-03-18 ~2016-8-31	20,000,000	19,129,510	-			
								-	2015-11-01 ~2017-06-30	9,400,000	9,004,000				
								-	2015-11-01 ~2018-10-31	11,960,000	11,458,400	4,588,800			
2	ㄷ	▼▼	산업기술 혁신사업	산업재 해심 기술 개발 사업	2017. 01.01	2021. 12.31.	1,292,240,000	-	2017-07-01 ~2021-08-31	54,454,355	50,352,675	401,755	AM 19,129,510 (추정액)  *** 72,124,380  *** 9,400,000  *** 44,043,682		
								-	2017-12-01 ~2021-08-31	43,765,000	40,319,800	5,736,000			
3	-	-	민간지원 사업	대 형 민 간 지 원 사 업	2018. 09.01.	2021. 08.31.	200,000,000	-	2018-09-01 ~2021-02-28	26,100,000	23,935,200				
								-	2018-09-01 ~2021-08-31	12,360,000	11,335,680				
4	예금이자							-			734,260				
								-			654,602				
합계							1,765,540,000				177,564,155	166,924,127	10,726,555	20,900,000* *AM 통장 출금 금액 미포함	135,297,572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7</b>	<p><b>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등 부적정</b></p> <p>○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기준」 Ⅱ. 일반기준(예산집행원칙.라) 및 Ⅲ. 세출과목별 기준(1-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따르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19~20) 서울대학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기관별로 학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연구성과 평가기준(지표:연구활동, 학술활동, 산학협력활동, 연구지원 활동별 비율을 균등 배분(25%))을 마련하여 평가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은 당해 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예산은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고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있는데도,</p> <p><b>【연구개발능률성과 평가 기준 미마련】</b> ..... ①</p> <p>- 서울대학교 △은 2020년 소속 연구원 1명의 연구개발 능률 성과 평가 시 연구, 학술활동 등 연구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급 3,443천원을 지급하는 등 <b>【붙임1】</b> “연구평가 평가기준 없는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 △ 등 5개 부서는 소속 연구원 총 153명의 연구 개발능률성과 평가 시 연구, 학술활동 등 연구성과</p>	<p><b>[①,③ 관련]</b></p> <p>○ 기관경고</p> <p><b>[① 관련]</b></p> <p>○ 통보</p> <p>- 자체 지침 및 계획에 따라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기 바람</p> <p><b>[② 관련]</b></p> <p>○ 경고(10명)</p> <p>○ 통보</p> <p>- 민간과제 간접비 수입액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합계 247,78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b>【민간과제 간접비 수입초과 집행 부적정】</b> ..... ②</p> <p>- 서울대학교 ◎은 2018회계연도에 ◆◆ 민간과제 81천원 등 12개 민간과제 위탁기관의 간접비 수입액 합계 39,927천원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40,000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민간과제 간접비 수입 초과집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울대학교 ◎ 등 8개 부서는 민간과제 위탁기관 96개 업체의 간접비 수입액 합계 257,294천원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합계 295,423천원을 집행하여 수입액 대비 38,129천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b>【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재원에서 연구지원금 지급 부적정】</b> ..... ③</p> <p>- 서울대학교 &amp;&amp;는 겸무연구원 사사표기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2018. 4. 18. AO에게 연구소 평가 연구 실적물 확보를 위한 사사표기 지원금 200천원을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재원(매년 5,000천원)에서 지급하는 등 [붙임3] “연구 개발능률성과급을 재원으로 연구지원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위 &amp;&amp;는 AO 등 8명의 교수에게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재원으로 연구지원금 총 32건, 합계 4,8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표기 내용) 이 연구는 &amp;&am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p>	<p><b>【③ 관련】</b></p> <p>○ 통보</p> <p>-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재원으로 연구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p>

【붙임1】

연구평가 평가기준 없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지급액				재원	세부기준 유무(○,×)	비고
		2018	2019	2020	합계 (‘18~’20)			
1	△	-	-	3,443 (1명)	3,443 (1명)	민간 간접비	×	
2	-	5,460 (10명)	-	-	5,460 (10명)	민간 간접비	×	과제책임자 및 연구비관리기관장, 공동연구원 지급비율 차등 (7:3)하였으나, 합리적기준 없음
3	-	-	22,273 (10명)	23,905 (10명)	46,178 (20명)	민간 간접비	×	-
4	-	-	72 (1명)	-	72 (1명)	본부 (정부 과제 등)	×	지급기준 미제출
5	-	34,559 (23명)	115,158 (66명)	42,919 (32명)	192,636 (121명)	민간 간접비	×	-
합 계		40,019 (33명)	137,503 (77명)	70,267 (43명)	247,789 (153명)			

【붙임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민간과제 간접비 수입 초과 집행 현황

(금액단위 : 원)

연도	부서명	민간과제 간접비 수입액(A)	민간과제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출액(B)	수입액 대비 초과집행액 (C=A-B)
2018년	◎	39,927,518	40,000,000	72,482
	-	-	1,600,000	1,600,000
	-	14,555,672	15,000,000	444,328
	-	9,885,000	17,460,000	7,575,000
	-	14,815,926	16,815,964	2,000,038
2019년	-	44,795,321	44,800,000	4,679
	-	-	3,375,000	3,375,000
2020년	-	3,573,695	6,000,000	2,426,305
	-	36,120,521	45,000,000	8,879,479
	-	-	500,000	500,000
	-	83,654,741	92,413,000	8,758,259
	-	2,706,301	2,800,000	93,699
	-	7,260,000	9,660,000	2,400,000
합 계		257,294,695	295,423,964	38,129,269

【붙임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연구지원금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천원)

연도	소속	학과	직급	성명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용
2018	-	-	-	AO	2018.04.18	200	연구소평가 연구실적물 확보를 위한 사사표기 지원금
			-	-	2018.05.08	100	
			-	-	2018.06.28	100	
			-	-	2018.07.31	200	
			-	-	2018.07.31	100	
			-	-	2018.08.07	100	
			-	-	2018.09.17	100	
			-	-	2018.10.11	300	
			-	-	2018.11.20	100	
			-	-	2018.11.26	100	
			-	-	2019.01.29	200	
2019	-	-	-	-	2019.03.26	100	
			-	-	2019.03.26	300	
			-	-	2019.03.26	200	
			-	-	2019.04.25	100	
			-	-	2019.04.25	100	
			-	-	2019.07.29	700	
			-	-	2019.08.23	100	
			-	-	2019.08.23	100	
			-	-	2019.10.31	100	
			-	-	2019.11.27	100	
			-	-	2019.12.26	200	
			-	-	2020.02.10	100	
			-	-	2020.02.10	100	
2020	-	-	-	-	2020.03.30	100	
			-	-	2020.06.03	100	
			-	-	2020.06.03	100	
			-	-	2021.01.08	100	
			-	-	2021.01.08	100	
2021	-	-	-	-	2021.07.01	200	
			-	-	2021.08.03	100	
			-	-	2021.08.27	100	
합 계(누계 8명, 32건)						4,8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8</b>	<p><b>연구비 대납비용 회수조치 등 미실시</b></p> <p>○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23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연구 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 내용 유출, 수행포기, 용도 외 연구비 사용, 연구 부정 행위 등을 사유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연구 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산학협력단장은 환수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기관차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리 납부 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P가 2004년 발주받은 ‘ㄴ’ 중 ‘ㄱ’을 수주(★★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협약)하고, 연구 단장으로서 동 사업의 과제 기획,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서 2013.12.31. 동 사업이 종료된 후 ‘성실실패(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p>	○ 경고(2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실패)로 결정하고, 2014. 9. 2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 출연금의 70%(1,462,300천원) 환수, 주관 연구책임자 AP에 대하여 참여 제한 2년의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은 행정소송(****법원 2014****, ****법원 2016****) 결과 2016. 12. 29. 원고(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외 1명) 패소 확정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 환수금 1,462,300천원을 3회('15. 8. 21 / '16. 1. 14. / '16. 6. 14.)에 걸쳐 산학협력단 간접비 회계에서 대납하고도 위 대납 금액에 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위 AP의 과실 여부 판단 및 손해보전을 위한 구상권 청구 등 조치 없이 수년간 방치한 사실이 있음.</p> <p>* 서울대학교 2020년도 제1차 연구비 환수 심의위원회('20.8.13.~ 8.14.) 서면심의 결과, “실패(성실수행)에 따른 환수금 1,462,300천원)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하고 면책하였음</p> <p>※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참여제한 등) 제1항(연구개발 결과 극히 불량)은 2020.6.9. 삭제되고, 대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6.9. 제정)」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됨, 2020.4.29. 개정된 ★★ 「해양수산연구개발 관리지침」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실패 과제(성실실패 포함) 내용은 유지됨</p>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39</b>	<p><b>연구비 미반납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19조 제 2항에 따르면 연구과제 미집행 잔액과 이자의 처리는 지원 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9. 5. ㉠으로부터 ‘그 (연구책임자 : AQ, 사업기간 : 2018.2.1.~ 2018.12.31., 총사업비 : 184,334천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관협력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강사비 한도 초과, 회의비 등 한도 초과, 수입지출명세서상 사업비 수입내역 및 이자내역 미작성 등을 사유로 연구비 13,517,317원의 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에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li>※ 2021. 10. 교육부 종합감사 이전까지 특별한 논의 없이 반납이 지연되었고, '21.12월경 ㉣에서 1,813,280원을 공제하여 최종 반납액이 13,517,317원으로 확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2명)</li> <li>○ 통보</li> <li>- 미반납된 연구비 합계 13,517,317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기관에 반납하기 바람</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0	<p><b>연구비 중앙관리 미 실시</b></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제5조, 제10조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총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에 있어서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및 성과의 활용,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연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교내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명의로 연구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는 2018년 □□으로부터 지원받은 210,000천원으로 'ㄱㄷ' 등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지 않고 '○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 명의 관리계좌(◆◆ ***-***-*****)로 연구비를 수령하여 임의 집행하는 등 【붙임】 “○ 연구과제 직접관리 현황”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으로부터 지원받은 28개의 연구과제, 연구비 합계 774,000천원을 산학협력단의 중앙관리를 받지 않고 연구소 명의 관리계좌에서 임의 집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2명)</p> <p>○ 통보</p> <p>- □□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하기 바람</p>

【붙임 2】

간연구소 연구과제 직접관리 현황

(금액단위 : 원)

연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기간	
	소속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2018	-	-	-	그드	■ ■	58,000,000	2018-03-01	2019-02-28
		-	-	-		30,000,000	2018-03-01	2019-02-28
		-	-	-		12,000,000	2018-03-01	2019-02-28
		-	-	-		30,000,000	2018-03-01	2019-02-28
		-	-	-		30,000,000	2018-03-01	2019-02-28
		-	-	-		30,000,000	2018-03-01	2019-02-28
	-	-	-	-		20,000,000	2018-03-01	2019-02-28
2019	-	-	-	-	■ ■	56,000,000	2019-03-01	2020-02-28
		-	-	-		30,000,000	2019-03-01	2020-02-28
		-	-	-		10,000,000	2019-03-01	2020-02-28
		-	-	-		27,000,000	2019-03-01	2020-02-28
		-	-	-		30,000,000	2019-03-01	2020-02-28
		-	-	-		27,000,000	2019-03-01	2020-02-28
	-	-	-	-		20,000,000	2019-03-01	2020-02-28
2020	-	-	-	-	■ ■	39,000,000	2020-03-01	2021-02-28
		-	-	-		30,000,000	2020-03-01	2021-02-28
		-	-	-		10,000,000	2020-03-01	2021-02-28
		-	-	-		27,000,000	2020-03-01	2021-02-28

연도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연구기간	
	소속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	-	-		30,000,000	2020-03-01	2021-02-28
		-	-	-		27,000,000	2020-03-01	2021-02-28
	-	-	-	-		20,000,000	2020-03-01	2021-02-28
2021		-	-	-	■ ■	39,000,000	2021-03-01	2022-02-28
		-	-	-		28,000,000	2021-03-01	2022-02-28
		-	-	-		10,000,000	2021-03-01	2022-02-28
		-	-	-		27,000,000	2021-03-01	2022-02-28
		-	-	-		30,000,000	2021-03-01	2022-02-28
		-	-	-		27,000,000	2021-03-01	2022-02-28
	-	-	-	-		20,000,000	2021-03-01	2022-02-28
<b>합 계 (28개 연구과제)</b>						<b>774,000,000</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41</b>	<p><b>물품관리 부적정</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 제70조에 따르면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학술 활동, 수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외로 반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교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물품운용원은 물품의 도난, 파손 및 망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사유를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도난, 파손 및 망실을 초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 제21조, 제23조, 제26조에 따르면 분임물품관리원은 소속기관의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물품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연구책임자가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 전환 신청서 및 반입 약약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반출할 수 있는데도,</p>	<p>○ 경고(11명)</p> <p>○ 주의(26명)</p> <p>○ 통보</p> <p>- 분실 또는 망실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AR은 연구비로 구입한 기기(취득가액 3,700,000원) 1대를 일자 미상일에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않는 등 【붙임1】 “물품 분·망실 현황”과 같이 위 AR 등 물품관리자 32명은 노트북 등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 58점 (취득가액 201,933,020원)을 분실 또는 망실하고도 변상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li> <li>- 또한, AS은 2021. 9. 1. “기기(취득가액 : 1,380,000원) 1대를 소정의 절차 없이 반출한 후 2021. 10. 감사일 현재 까지 사용하는 등 【붙임2】 “물품 반출 현황”과 같이 위 AS 등 물품관리자 6명은 2020. 12.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 총 6점 (취득가액 13,714,400원)을 소정의 절차 없이 반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li> </ul>	

【붙임1】

물품 분·망실 현황

(단위: 원, 대)

연번	물품명	물품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물품 보관 여부(○, ×)	관리기관	물품 관리자	회계		
1	그르	-	2009-03-06	3,700,000	x	-	AR	산단		
2	-	-	2011-01-16	1,428,900	x	-	-	산단		
3	-	-	2009-09-02	9,970,400	x	-	-	산단		
4	-	-	2011-08-29	6,600,000	x	-				
5	-	-	2013-04-30	2,860,000	x	-				
6	-	-	2013-08-20	1,450,000	x	-				
7	-	-	2016-01-28	1,320,000	x	-				
8	-	-	2016-01-28	1,980,000	x	-				
9	-	-	2011-01-25	1,024,900	x	-			-	산단
10	-	-	2011-02-01	1,496,000	x	-			-	산단
11	-	-	2011-03-08	1,170,000	x	-	-	산단		
12	-	-	2011-03-08	1,170,000	x					
13	-	-	2011-03-08	1,170,000	x					
14	-	-	2011-06-28	14,850,000	x	-	-	산단		
15	-	-	2011-10-13	1,039,000	x	-	-	산단		
16	-	-	2011-10-16	1,039,000	x					
17	-	-	2017-08-09	1,028,500	x					
18	-	-	2011-11-16	4,290,000	x	-	-	산단		
19	-	-	2011-11-16	4,950,000	x					
20	-	-	2011-11-16	6,490,000	x					
21	-	-	2011-12-20	1,100,000	x	-	-	산단		
22	-	-	2012-01-05	10,010,000	x	-	-	산단		
23	-	-	2012-02-24	1,199,000	x	-	-	산단		
24	-	-	2012-03-16	17,600,000	x	-	-	산단		
25	-	-	2012-03-28	8,000,000	x	-	-	산단		
26	-	-	2012-04-02	1,019,000	x	-	-	산단		
27	-	-	2013-07-04	1,480,000	x					
28	-	-	2012-06-07	1,140,000	x	-	-	산단		
29	-	-	2014-04-07	1,450,000	x					

연번	물품명	물품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물품 보관 여부(○, ×)	관리기관	물품 관리자	회계
30	-	-	2012-06-29	2,343,820	×	-	-	산단
31	-	-	2012-11-14	1,749,000	×	-	-	산단
32	-	-	2008-07-03	1,219,900	×			
33	-	-	2013-05-13	2,000,000	×			
34	-	-	2014-03-14	1,400,000	×			
35	-	-	2015-03-02	2,300,000	×			
36	-	-	2016-06-16	2,500,000	×			
37	-	-	2016-06-16	2,000,000	×			
38	-	-	2018-12-28	2,574,000	×			
39	-	-	2012-12-12	1,140,700	×	-	-	산단
40	-	-	2011-01-18	1,386,000	×	-	-	산단
41	-	-	2013-07-03	5,940,000	×			
42	-	-	2014-05-26	1,177,000	×			
43	-	-	2014-07-24	10,835,000	×	-	-	산단
44	-	-	2014-08-27	9,900,000	×			
45	-	-	2015-12-02	8,250,000	×			
46	-	-	2016-01-12	4,400,000	×			
47	-	-	2014-12-31	2,100,000	×	-	-	산단
48	-	-	2015-03-16	2,904,600	×	-		
49	-	-	2015-01-02	2,000,000	×	-	-	산단
50	-	-	2015-01-14	8,497,500	×	-	-	산단
51	-	-	2015-11-27	1,350,000	×	-	-	산단
52	-	-	2016-07-13	1,309,800	×	-	-	산단
53	-	-	2018-02-07	2,200,000	×	-	-	산단
54	-	-	2018-02-07	2,200,000	×			
55	-	-	2019-10-11	2,365,000	×	-	-	산단
56	-	-	2006-06-07	638,000	×	-	-	교비
57	-	-	2007-09-04	1,605,000	×		-	교비
58	-	-	2008-07-02	1,623,000	×		-	교비
합 계(32명, 58점)				201,933,020				

【붙임2】

물품 반출 현황

(단위: 원)

연번	관리기관	물품관리자	물품명 (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반출일
1	-	AS	-	2016-09-12	1,380,000	2021-09-01
2	-	-	-	2018-01-18	2,310,000	2020-12-01
3	-	-	-	2018-01-24	1,749,000	2021-05-01
4	-	-	-	2018-02-14	1,496,000	2021-07-01
5	-	-	-	2020-06-03	1,319,000	2021-04-09
6	-	-	-	2012-09-04	5,460,400	2021-09-30
합 계					<b>13,714,400</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2	<p><b>기술주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취득 부적정</b></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제36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p> <p>- ●는 자회사인 ▲▲가 2015. 12. 및 2020. 9. 위 ●의 다른 자회사인 ○○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총 27.5%)을 소유* 하고 있음에도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주식양도(매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현재 ○○ 주식 26,250주(262,500천원 상당, 지분 20.7%) 소유</p>	<p>○ 경고(3명)</p> <p>○ 통보</p> <p>- ▲▲에서 취득·소유 중인 ○○의 지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b>43</b>	<p><b>사적 이해관계 미신고</b></p> <p>○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p> <p>- 서울대학교 ● 교수이자 ●●(“14.8. 설립) 대표이사인 AT는 2020. 12. 31. 기준으로 【붙임】 “●●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이 본인과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지분이 총 발행주식의 36.14%에 달함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법인세법」 제2조 : 법인과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인의 임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있는 자를 말함</p>	○ 경고(1명)

【붙임】

●●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출처: ●● 사업보고서)

성명	관계	보통주 현황('20.12.31.기준)		비고
		주식수	지분율	
AT	본인	5,082,000	32.75	* 소액주주 소유 주식수 : 6,472,884주 (41.71%)
-	아들	240,000	1.55	
-	딸	240,000	1.55	
-	배우자	45,000	0.29	
합 계		5,607,000	36.1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4	<p><b>연구과제 예비 중복(초과) 지급</b></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과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항목별 사용용도, 사용기준 등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대학교 예비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예비규정」 제4조, 5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숙박은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고(기타 세부사항은 별표1~별표5에 따라 지급),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교직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기관경고</p> <p>○ 시정(회수)</p> <p>- 중복(초과) 지급된 예비 합계 21,589,400원을 연구책임자 112명으로부터 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p> <p>○ 통보</p> <p>- 향후 중복(초과) 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AU가 ○○에서 지원하는 ‘기비(연구기간 : 2018. 3. 1. ~ 2019. 2. 31., 연구비 : 70,000천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제122회 학술발표회 참석 목적으로 출장한 기간(2018. 10. 17. ~ 19.)의 출장여비를 중복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8. 10. 19. 여비 14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2. 7. 위 출장건의 여비 150,000원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 <b>【붙임】</b> “연구과제 여비 중복(초과) 신청·지급 현황”과 같이 위 AU 등 연구책임자 112명이 2018년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총 302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 합계 21,589,400원을 중복(초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연구과제 예비 중복(초과) 신청·수령 현황

연번	연구책임자			출장개요									예비지급액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비고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목적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지급일	금액	계				
1	-	-	-	-	-	-	기타	●●	●● 제122회 학술발표회 참석	2018.10.17	2018.10.19	-	2018.12.07	150,000	290,000	140,000	150,000		
									●● 제122회 학술발표회 참석	2018.10.17	2018.10.19	-	2018.10.19	140,000					
2	-	-	-	-	-	-	-	-	-	2019.03.29	2019.03.29	-	2019.03.19	70,000	120,000	50,000	70,000		
									-	2019.03.29	2019.03.29	-	2019.04.08	50,000					
3	-	-	-	-	-	-	-	-	-	2019.04.10	2019.04.10	-	2019.04.25	30,000	60,000	30,000	30,000		
									-	2019.04.10	2019.04.10	-	2019.04.16	30,000					
∴																			
301	-	-	-	-	-	-	-	-	-	2018.10.25	2018.10.25	-	2018.11.02	20,000	100,000	60,000	40,000		
									-	2018.10.25	2018.10.25	-	2018.11.21	20,000					
									-	2019.10.25	2019.10.25	-	2019.11.14	20,000					
									-	2019.10.25	2019.10.25	-	2019.11.14	40,000					
302	-	-	-	-	-	-	-	-	-	2019.11.04	2019.11.06	-	2019.12.31	302,536	322,536	302,536	20,000		
									-	2019.11.04	2019.11.04	-	2019.12.16	20,000					
계														49,290,076	582,536	310,0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5	<p><b>교내연구비 지원 절차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 내용 및 기간, 신청 자격,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부서는 신청 과제를 연구의 필요성·타당성·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실적, 연구계약 이행 여부,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 계획과 학문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 및 심사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AV의 연구과제(연구과제명 : ㄱ사, 연구기간 : 2019. 1. 1. ~ 2021. 12. 31.)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고 및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비 합계 20,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붙임】 “교내연구비 미공고·미심의 지원 현황”과 같이 위 AV 등 연구책임자 441명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고 및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비 17,984,234천원(700개 연구과제)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연구비 지원 시 공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예외적으로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li> </ul> </li> </ul>

【붙임】

교내연구비 미공고·미심의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연구비 지원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년도	부서	학과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1	2019	-	-	-	-	그스	2019.01.01	2021.12.31	20,000
2	2019	-	-	-	-	-	2019.06.10	2020.02.29	10,000
3	2020	-	-	-	-	-	2020.11.01	2021.10.31	35,000
4	2018	-	-	-	-	-	2018.12.01	2019.03.31	10,000
5	2020	-	-	-	-	-	2020.05.01	2020.06.30	3,000
6	2021	-	-	-	-	-	2021.08.01	2022.01.31	13,000
7	2021	-	-	-	-	-	2021.05.24	2022.02.23	37,649
8	2021	-	-	-	-	-	2021.05.24	2022.02.23	40,880
9	2020	-	-	-	-	-	2020.03.01	2021.02.28	34,760
10	2020	-	-	-	-	-	2020.12.01	2021.11.30	67,160
∴									
690	2018	-	-	-	-	-	2018.08.02	2019.03.02	3,920
691	2020	-	-	-	-	-	2020.05.01	2021.04.30	10,000
692	2019	-	-	-	-	-	2019.06.10	2020.02.29	15,000
693	2019	-	-	-	-	-	2019.11.15	2020.02.14	5,000
694	2019	-	-	-	-	-	2019.07.01	2019.10.31	10,000
695	2016	-	-	-	-	-	2016.09.01	2017.02.28	15,000
696	2021	-	-	-	-	-	2021.02.01	2021.06.30	10,000
697	2017	-	-	-	-	-	2017.07.01	2017.09.30	10,000
698	2016	-	-	-	-	-	2016.03.01	2018.02.28	13,434
699	2017	-	-	-	-	-	2017.03.01	2018.02.28	8,500
700	2017	-	-	-	-	-	2017.09.01	2018.02.28	15,000
계									<b>17,984,234</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6	<p><b>민간연구비 집행기준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제 규정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제 규정의 우선순위는 학칙, 규정, 시행세칙, 지침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의 제 규정 간에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산학협력단장과 관리기관의 장에게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의 운영외수익에 편입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2014. 1. 1.)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종료 후 1년까지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15. 3. 4. 동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원기관이 정산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종료 후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실이 있음.</li> <li>- 이에 따라, AW는 '10' 등 2개의 민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연구종료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경고</li> <li>○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 바람</li> </ul> </li> </ul>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연구비 합계 4,604천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 “민간 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21. 8.까지 위 AW 등 연구책임자 849명은 3,86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합계 70,798,355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민간 연구과제 연구기간 종료 후(2016.1.1.이후) 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연구과제	종료 후 집행금액
1	-	-	AW	10	4,604
2	-	-	-	-	141,168
3	-	-	-	-	8,002
4	-	-	-	-	467,159
5	-	-	-	-	6,495
6	-	-	-	-	548,972
7	-	-	-	-	10,944
8	-	-	-	-	2,000
9	-	-	-	-	74,699
10	-	-	-	-	22,800
∴					
840	-	-	-	-	6,680
841	-	-	-	-	19,819
842	-	-	-	-	15,250
843	-	-	-	-	89,887
844	-	-	-	-	21,905
845	-	-	-	-	189,833
846	-	-	-	-	150,943
847	-	-	-	-	69,585
848	-	-	-	-	3,235
849	-	-	-	-	4,440
계					<b>70,798,355</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7	<p><b>학생연구원 인건비(연구장학금) 지급 부적정</b></p> <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 자료를 갖추게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및 연구비의 투명한 사용 책임이 있으며,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및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AX는 ‘그즈(연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지원기관 :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 석사과정 AY를 참여(2020. 3. 1.~ 2020. 12. 31.)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하여 군복무(2018. 8. 9.~ 2020. 3. 27.)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523천원을 지급</p>	<p>○ 경고(4명)</p> <p>○ 시정(회수)</p> <p>- 미참여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2,315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하는 등 【붙임】 “미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20년 위 AX 등 교원 4명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위 AY 등 3명의 학생 연구원에게 합계 2,31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현지전역(제대 전 휴가) 중이라도 예외 없음</p>	

**【붙임】**

**미참여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학생연구원				미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액 (정산일수)
						학과	성명	연구 참여기간	군복무 기간	
1	-	-	AX	그저	2020.01.01. ~ 2020.12.31	-	AY	2020.03.01. ~ 2020.12.31.	2018.08.09. ~ 2020.03.27	523 (27일)
2	-	-	-	-	2020.03.01. ~ 2020.08.31	-	-	2020.03.01. ~ 2020.08.31.	2018.08.09. ~ 2020.03.27	871 (27일)
3	-	-	-	-	2020.03.01. ~ 2021.02.28	-	-	2020.07.01. ~ 2020.08.31.	2019.01.14. ~ 2020.08.21. (현지전역 2020.07.28.)	271 (28일)
4	-	-	-	-	2020.09.01. ~ 2021.02.28	-	-	2020.09.01. ~ 2021.02.28.	2019.03.11. ~ 2020.10.14. (현지전역 2020.09.16.)	650 (16일)
<b>합 계</b>										<b>2,315</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8	<p><b>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b></p> <p>○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운영 규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은 전임교원 중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로 해당 학과(부)의 강의 면제 교원은 교원 현원의 7분의 1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하고,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원 해외파견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외파견 교원은 파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AZ는 2016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연구기간 : 2016. 3. 1. ~ 2016. 8. 31. 연구과제명 : ㄱ)되어 연구를 진행한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기한(2017. 2. 28.)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b>【붙임】</b>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으로 선정된 위 AZ 등 교원 415명은 연구년(파견) 종료 후 활동(파견)보고서 총 480건에 대해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짧게는 183일에서 길게는 1,902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131명)</p> <p>○ 주의(284명)</p> <p>○ 통보</p> <p>-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붙임】

연구년 및 해외파견 교원 활동(파견)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연번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파견)기간		연구비	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 일수
					시작일	종료일				
1	-	-	AZ	기초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2	-	-	-	-	2016.03.01	2017.02.28	-	2017.08.28	-	미제출
3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4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5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6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7	-	-	-	-	2016.03.01	2017.02.28	-	2017.08.28	-	미제출
8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9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	미제출
10	-	-	-	-	2016.03.01	2017.02.28	-	2017.08.28	-	미제출
∴										
148	-	-	-	-	2016.05.11	2016.05.31	-	2016.06.30	2021.09.14	1,902
149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2021.09.17	1,662
150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2021.09.13	1,658
151	-	-	-	-	2016.03.01	2016.08.31	-	2017.02.28	2021.09.13	1,658
∴										
470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9.06	190
471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9.03	187
472	-	-	-	-	2018.03.01	2018.08.31	-	2019.02.28	2019.09.02	186
473	-	-	-	-	2019.09.01	2020.08.31	-	2021.02.28	2021.09.02	186
474	-	-	-	-	2019.09.01	2020.08.31	-	2021.02.28	2021.09.02	186
475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9.02	186
476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9.02	186
477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9.02	186
478	-	-	-	-	2019.09.01	2020.02.29	-	2020.08.29	2021.03.02	185
479	-	-	-	-	2018.03.01	2018.08.31	-	2019.02.28	2019.08.30	183
480	-	-	-	-	2020.03.01	2020.08.31	-	2021.02.28	2021.08.30	183
<b>합 계 (415명, 480건)</b>							<b>6,000</b>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9	<p><b>직무발명 미신고</b></p> <p>○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공립학교(국가가 국립대학으로 설립한 국립학교 포함)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전담조직(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서울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보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3조에 따르면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하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 BA는 2021. 4. 1. ‘ㄱㄱ’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는 등 【붙임】 “직무발명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03. 9.부터 2021. 4.까지 위 BA 등 교원 18명은 직무발명 21건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음.</p>	<p>○ 주의(18명)</p> <p>○ 통보</p> <p>-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바람</p>

【붙임】

직무발명 미신고 현황

연번	학과	직급	성명	발명의 명칭	특허 출원		특허 등록		비고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	-	BA	ㄱㄱ	2019.5.9.	1020190054024	2021.4.1.	1022371180000	
2	-	-	-	-	2018.6.14.	1020180068023	2020.8.7.	1021444050000	
3	-	-	-	-	2017.5.11.	1020170058502	2019.3.8.	1019584430000	
4	-	-	-	-	2017.7.26.	1020170094825	2019.2.14.	1019503070000	
5	-	-	-	-	2016.12.2.	1020160163165	2018.7.17.	1018812260000 (발명자 미포함)	직무관련 특허 권리자
6	-	-	-	-	2013.2.12.	1020130014817	2014.5.7.	1013914040000	
7	-	-	-	-	2013.5.9.	1020130052508	2014.11.6.	1014635880000	
8	-	-	-	-	2010.11.29.	1020100120044	2011.11.23.	1010880820000	
9	-	-	-	-	2010.11.29.	1020100120044	2011.11.23.	1010880820000	
10	-	-	-	-	2009.1.9.	1020090001792	2009.6.15.	1009040880000 (발명자 미포함)	직무관련 특허 권리자
11	-	-	-	-	2006.8.8.	1020060074850	2008.4.10.	1008227030000	
				-	2007.8.13.	1020070081019	2008.10.30.	1008671060000	
				-	2001.8.10.	1020010048144	2005.9.23.	1005181030000	
12	-	-	-	-	2003.5.6.	1020030028692	2006.7.4.	1005993190000	
13	-	-	-	-	2002.12.27.	1020020085037	2006.6.2.	1005882920000	
				-	2002.12.27.	1020020085032	2006.6.2.	1005882980000	
14	-	-	-	-	2003.11.24.	1020030083535	2006.12.13.	1006594710000	
15	-	-	-	-	2002.1.17.	1020020002675	2005.1.4.	1004660990000	
16	-	-	-	-	2001.9.10.	1020010055554	2005.1.20.	1004688660000 (발명자 미포함)	직무관련 특허 권리자
17	-	-	-	-	2001.10.30.	1020010067044	2004.10.27.	1004558980000	
18	-	-	-	-	2002.8.30.	1020020051923	2003.9.24.	1004008020000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0	<p><b>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때의 설계변경 적용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나, 계약단가가 공사의 입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의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이하 ‘협의단가’)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단가가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는 2018. 11. 30. ■■■과 계약한 ‘서울대학교 기트 재건축공사(계약금액 9,366,442천원)’를 추진하면서</li> </ul>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11명)</li> <li>○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11,136천원을 ■■■ 등 3개 시공 업체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li> </ul> </li> </ul>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학교측 요구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정가격            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높은 H빔*(규격 194*150*6.0*9.0mm)            등 물량이 증가된 품목에 대한 적용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6,876천원을 과다 지급            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설계변경 적용단가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11.월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            까지 위 ‘서울대학교 기트 재건축공사’ 등 3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학교측 요구 등으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예정가격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높은데도 물량이            증가되는 품목의 적용단가를 예정가격단가 또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협의단가(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공사비 합계            11,136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예정가격단가가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된 품목</p>	

【붙임】

시설공사 설계변경 적용단가 부적정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1	서울대학교 7E 재건축공사 2018.12.03.~2021.7.19. 2021.01.04. 2021.07.19. (최초)9,366,442천원 (준공)9,913,099천원 □□ 대표 *** ****건설 대표 ***	건축	'H빔, SS400, 194*150*6.0*9.0mm	TO N	1.68	740,000	749,834	740,000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6,876
			철골도장 방청2회(뿔칠)	M2	114.912	3,915	4,160	6,373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천매	0.149	180,920	251,644	291,933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천매	23.607	170,418	230,415	252,329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6인치 블록 쌓기 150*190*390	M2	35.2	30,437	31,149	35,195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블록상부사춤 6"*10mm	M	7.5	2,906	3,408	2,906	예정가격단가	
			블록메시(6"용), #8	M	60	472	1,395	472	예정가격단가	
			수밀코킹 10mm, 창호	M	145.2	1,627	3,964	3,307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SD - 03 1.5x2.5 = 3.75	EA	1	391,679	412,702	412,929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MORTISE LEVER HANDLE	SET	42	41,000	53,423	73,423	설계변경당시 거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DUMMY HANDLE	SET	136	36,000	78,081	69,371	설계변경당시 거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FLUSH RING HANDLE	PC	2	9,000	15,697	9,000	예정가격단가	
			HALF PROFILE CYLINDER KEY	PC	2	34,000	34,520	34,000	예정가격단가	
			AUTO DOOR BOTTOM	PC	1	47,000	51,780	47,000	예정가격단가	
			도아록설치 강재문, 재료비 별도	개소	54	1,048	1,452	1,265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수성페인트 내부2회,1급	M2	15.6	5,268	7,874	7,835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수성페인트 외부2회,1급	M2	325.24	5,082	6,118	7,911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수성외부천장 2회,1급	M2	221	5,991	7,176	9,512	설계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건설폐기물상차번호0. 7M3	TO N	6.13373	2,016	2,343	2,016	예정가격단가				
건설폐기물운반비(중 간)24톤덤프,30km	TO N	6.13373	11,562	13,775	11,562	예정가격단가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기계	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SPP), D200, 반제품)	M	2	28,825	42,870	29,75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TYPE, D20)	M	1	2,109	2,786	2,17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TYPE, D32)	M	27	3,705	5,217	3,78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100x3T)	M	7	27,472	34,247	25,30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PVC 관(VG1, 고무링) D100)	M	3	7,787	18,725	7,48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엘보(SUS 용접#10) D100)	EA	1	15,660	20,908	15,97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소제구 (고무링) D100)	EA	1	1,181	3,607	1,20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게이트 밸브(청동,10kg,D32)	EA	6	24,600	26,066	25,14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게이트 밸브(청동,10kg,D50)	EA	4	49,000	51,811	49,98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절연 , D32)	EA	4	400	473	24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절연 , D100)	EA	4	850	891	1,68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TYPE, D13)	M	293	1,273	1,767	1,32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TYPE, D20)	M	1,057	2,109	2,786	2,17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TYPE, D40)	M	369	4,513	6,098	4,635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 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게이트 밸브(청동,10kg,D20)	EA	72	12,000	12,780	12,33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게이트 밸브(청동,10kg,D40)	EA	1	32,800	34,682	33,46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절연 , D25)	EA	4	360	438	24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절연 , D80)	EA	1	680	857	74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절연 , D100)	EA	91	850	891	1,68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내화충전제(강관용) 입상(D100)	개소	91	8,240	8,711	11,34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50x3T)	M	22	14,204	17,702	13,08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80x3T)	M	251	21,233	26,466	19,56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D100x3T)	M	47	27,472	34,247	25,30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PVC 관(VG1,고무링) D50)	M	46	2,572	6,297	2,46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PVC 관(VG1,고무링) D75)	M	40	5,110	12,383	4,91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PVC 관(VG1,고무링) D100)	M	72	7,787	18,725	7,48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저소 음이중관,D100)	M	2	8,196	8,719	7,48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SIS강관 이음쇠(엘보(SUS 용접#10) D50)	EA	14	4,710	5,662	4,80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엘보(SUS 용접#10) D100)	EA	14	15,660	20,908	15,97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티이(SUS 용접 S#10) D80)	EA	59	15,700	20,908	16,02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티이(SUS 용접 S#10) D100)	EA	1	23,800	32,757	24,29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소제구 (고무링) D50)	EA	3	590	1,384	53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소제구 (고무링) D100)	EA	11	1,181	3,607	1,20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바닥배수구(육가(F.D, 이중식) D75)	EA	1	15,320	15,681	11,83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청소쟁크스리 브 D75)	EA	1	1,020	1,044	1,02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플랜지(PVC TS 플랜지 D50)	EA	3	3,300	13,068	25,601	설계변경당시물 가정보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내화충전제(PVC용) 입상(D100)	개소	17	8,640	8,711	21,219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플렉시블덕트((AL비 보온), D150)	M	2	4,080	4,180	3,91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스텐밴드(D150)	EA	4	990	2,613	80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FD/FVD 휴즈	EA	7	1,000	10,453	81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DAMPER(350x650)	EA	13	68,000	104,547	167,10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DAMPER ACTUATOR(2Nm)	EA	13	165,000	304,930	122,419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소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50, 반제품)	M	28	4,858	7,224	5,55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백관 (SPP), D65, 반제품)	M	2	6,210	9,234	7,10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백관 (SPP), D80, 반제품)	M	6	8,066	11,993	9,23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백관 (SPP), D100, 반제품)	M	7	11,567	17,204	13,25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백관 (SPP), D150, 반제품)	M	9	18,207	27,080	20,85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50)	EA	10	2,794	2,969	3,16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40)	EA	2	1,663	1,767	1,89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무용접후렌지아답타 니플(D150)	EA	2	51,700	63,948	52,069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소화기	EA	19	16,320	23,523	20,40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U자형볼트/너트(비절 연, D150)	EA	1	590	661	2,05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5, 반제품)	M	148	2,338	3,479	2,67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25, 반제품)	M	321	2,338	3,479	3,13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32, 반제품)	M	37	3,002	4,463	3,435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SPP), D32, 반제품)	M	32	3,002	4,463	4,02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배관용 탄소강관(백관(SPP), D40, 반제품)	M	32	3,450	5,132	3,94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SPP), D40, 반제품)	M	39	3,450	5,132	4,619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SPP), D50, 반제품)	M	4	4,858	7,224	5,55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백관(SPP), D50, 반제품)	M	76	4,858	7,224	6,52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무용접)(백관(SPP), D65, 반제품)	M	4	6,210	9,234	7,10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무용접)(백관(SPP), D80, 반제품)	M	9	8,066	11,993	9,23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배관용 탄소강관(무용접)(백관(SPP), D125, 반제품)	M	2	15,328	22,792	17,538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	EA	39	1,001	1,061	1,13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	EA	145	1,001	1,061	1,13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32)	EA	17	1,498	1,593	1,697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40)	EA	21	1,786	1,898	2,02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40)	EA	2	1,786	1,898	2,02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25)	EA	11	1,382	1,471	1,56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25)	EA	50	1,382	1,471	1,56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32)	EA	2	1,858	1,985	2,11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32)	EA	2	1,858	1,985	2,11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티이 (나사) D50)	EA	1	3,636	3,867	4,12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25)	EA	11	886	911	1,101	설계변경당시거 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32)	EA	5	1,145	1,178	1,428	설계변경당시거 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32)	EA	2	1,145	1,178	1,428	설계변경당시거 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40)	EA	4	1,361	1,397	1,697	설계변경당시거 래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캡 (나사) D25)	EA	13	662	704	75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캡 (나사) D25)	EA	22	662	704	75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소방용헤드(스프링클 러헤드,(폐쇄상향)72 ℃)	EA	29	2,400	4,704	3,501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드라이펜던트(플러쉬) (290mm)	EA	29	24,000	24,393	26,524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후렉시블조인트(소방 용)	SET	29	7,500	13,068	9,793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조합페인트칠(배관용) (철재면2회)	M2	25	934	5,777	83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조합페인트칠(배관용) (철재면2회)	M2	23	934	5,777	83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설계변경일 계약금액 준공금액 계약자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증가 수량	예정 가격 단가 (원)	계약 단가 (원)	정정 적용		과다 지급 금액 * (천원)
								단가 (원)	내용(사유)	
			횡방향버팀대(내진)(D65)	개소	8	74,373	123,014	51,41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중방향버팀대(내진)(D65)	개소	6	75,373	109,240	52,23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헤드말단배관지대(내진)(D25)	개소	23	12,970	30,144	3,819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낙찰률 81.613% 적용	
2	서울대학교 **** 재건축 공사 2020.2.3.~2022.8.17. 2021.2.3. (최초)9,169,578천원 (공사중)9,855,939천원 주식회사 ****건설 (대표 ***)	토목	wale 모서리연결	개소	33	108,889	134,343	135,632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협의율 90.79605% 적용	1,006
			wale 중간이음	개소	40	34,194	64,691	26,006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협의율 90.79605% 적용	
			E/A 천공(연암)	m	113.56	23,876	26,520	33,830	설계변경당시물 가자료가격 ※ 협의율 90.79605% 적용	
3	****대학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2019.11.27.~2020.2.24. 2020.2.13. (최초)518,116천원 (준공)482,744천원 (주)**** (대표 ***)	전기	조명기구 LED D/L 20W	개	38	48,420	63,528	48,420	예정가격단가	3,254
			조명기구 T-5 20W	개	40	36,036	43,905	36,036	예정가격단가	
			시스템박스	개	15	70,357	82,023	70,357	예정가격단가	
			접지용비닐절연전선	M	130	3,809	5,407	3,809	예정가격단가	
			케이블트레이	M	30	59,997	101,536	59,997	예정가격단가	
계	3건								11,13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1	<p><b>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책정 부적정</b></p> <p>○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고,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을 당해 공사의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2019. 11. 13. ‘그고 공사(부분)(계약금액 19,866천원)’를 ○○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방수공사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보다 짧은 1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2019. 11. 29.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고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붙임】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공사 현황”과 같이 2019. 11.부터 2020. 10.까지 위 ‘그고 공사(부분)’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짧게(1년 또는 2년) 계약 체결하고, 준공검사 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짧은(1년 또는 2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고 공사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3명)</p> <p>○ 주의(1명)</p> <p>○ 통보</p> <p>-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그고 공사(부분)’ 등 3건 공사에 대하여 ○○ 등 2개 시공사로부터 적법한 하자보증서를 제출받기 바람</p>

【붙임】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현황					법정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담당부서	결재 /담당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회사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	그고 공사(부분)	19,866	2019.11.13.	2019.11.16. ~2019.11.28.	○○	1년	3년	-	-
2	-	21,428	2020.04.28.	2020.04.28. ~2020.05.08.	-	1년	3년	-	-
3	-	20,500	2020.09.15.	2020.09.16. ~2020.10.15.	-	2년	3년	-	-
합 계		61,794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2	<p><b>전문공사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b></p> <p>○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건설업종을 세분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5,000천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건설업종별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2018. 11. 27. ‘ㄱㅎ(계약금액 18,953천원)’를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 등록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위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건축공사업(종합공사)’ 등록업체인 <b>○○○</b>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p> <p><b>【붙임】</b> “건설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공사 계약 현황”과 같이 2018. 11.부터 2020. 9.까지 위 ‘ㄱㅎ’ 등 총 4건의 공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6명)</p> <p>○ 주의(3명)</p> <p>&lt;별도조치&gt;</p> <p>○ 고발</p>

【붙임】

건설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현황					요구되는 건설업 면허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회사	건설업 면허	
1	그중	18,953	2018.11.27.	2018.11.28. ~2018.12.05.	☐☐	건축공사업 (종합)	실내건축공사업 (전문)
2	-	19,866	2019.11.13.	2019.11.16. ~2019.11.28.	-	건축공사업 (종합)	습삭방수공사업 (전문)
3	-	21,428	2020.04.28.	2020.04.28. ~2020.05.08.	-	건축공사업 (종합)	습삭방수공사업 (전문)
4	-	20,500	2020.09.15.	2020.09.16. ~2020.10.15.	-	시설물유지 관리업(전문)	습삭방수공사업 (전문)
합 계		80,747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3	<p><b>시설공사 감리자 지정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20. 12. 28. ■■■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 소방공사(계약금액 33,144천원, 공사기간 ‘21.1.4.~’21.2.22.)’를 2021. 1. 4. 착공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서울대학교(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가 아닌 소방시설 시공업체로 선정된 위 ■■■가 직접 지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li> </ul> <p>※ 감리업체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1명)</li> <li>○ 주의(1명)</li> </ul>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4	<p><b>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 부적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서울대학교는 2018. 3. 12. 주식회사 ■■■ 대표 BB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 공사(계약금액 6,812,622천원)’를 추진하면서 ‘토목공사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6,779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b>【붙임】</b>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1. 부터 2020. 10.까지 준공된 위 ‘서울대학교 ■■■ 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서 설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는데도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합계 10,53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6명)</li> <li>○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10,537천원을 ■■■ 등 3개 시공사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거나 재시공하기 바람</li> </ul> </li> </ul>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공사명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대표자)	시공 부적정 내역				비고
		공사기간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용	공사비 과다 지급액*	
1	서울대학교 노노 공사	'18.03.12 ~ '18.03.13. ~ '19.01.16.	6,812,622	■ (BB)	-설계도면 (합판거푸집 반영)  보차도경계석 설치 (200*250*1000) 660m	-합판거푸집 미시공  보차도경계석 설치 (200*250*1000) 660m	설계 도서와 상이하계 시공	6,779	
2	-	'20.05.14. ~ '20.05.15. ~ '20.09.11.	200,974	-	경량철골천정틀 (MBAR, HInP강 인서트유) 133.76㎡	경량철골천정틀 (MBAR만 설치) 133.76㎡	규격변경 시공	3,249	
3	-	'20.09.15. ~ '20.09.16. ~ '20.10.15.	20,500	-	우레탄 수직(3I) 70.7㎡	우레탄 수직(2I) 70.7㎡	규격변경 시공	509	
합 계								10,537	

\* 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5	<p><b>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b></p> <p>○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2020.6.30. 이전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p> <p><b>【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에 관한 사항】</b> ——— ①</p> <p>- 서울대학교는 2020. 9. 15. ■■■ 대표 BC와 계약한 ‘■■■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6천원 계상을 누락하는 등 <b>【붙임1】</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 계상 공사 현황”과 같이 2020. 8.부터 2021. 8.까지 위 ‘■■■ 공사’ 등 총 27건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508천원 계상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p>	<p>&lt;①, ② 관련&gt; ○ 경고(23명)</p> <p>&lt;① 관련&gt; ○ 주의(14명)</p> <p>&lt;별도조치&gt; ○ 통보</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b>【수의계약 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 ②</b></p> <p>- 또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 계상하여 2020. 9. 15. ▣▣ 대표 BC와 계약한 'ㄴㄷ 공사'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산출하고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b>【붙임2】</b>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공사 현황”과 같이 2020. 8.부터 2021. 7.까지 위 'ㄴㄷ 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 계상하여 추정가격을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로 산출하고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누락 계상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공사명	공사 품의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정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금액		
		공사 계약일	당초	정정	당초	수정	
1	ㄴㄷ 공사	2020.09.08.	미계상	456	21,690	22,300	-
		2020.09.15.					
2	-	2021.08.13.	미계상	451	20,500	21,060	-
		2021.08.18.					
3	-	2021.06.04.	미계상	500	21,670	22,230	-
		2021.06.10.					
4	-	2020.11.26.	미계상	524	21,643	22,210	-
		2020.11.27.					
5	-	2020.12.27.	미계상	468	21,670	22,590	-
		2020.12.28.					
6	-	2021.04.08.	미계상	482	20,420	21,010	-
		2021.04.09.					
7	-	2020.11.27.	미계상	854	39,400	42,010	-
		2020.11.25.					
8	-	2020.11.25.	미계상	734	33,854	34,740	-
		2020.11.30.					
9	-	2021.02.09.	미계상	474	21,989	22,590	-
		2021.02.10.					
10	-	2021.02.09.	미계상	521	21,959	22,610	-
		2021.02.10.					
11	-	2021.07.15.	미계상	1,001	54,670	56,030	-
		2021.07.29.					
12	-	2021.02.15.	미계상	505	20,000	20,570	-
		2021.02.15.					
13	-	2021.04.12.	미계상	495	21,800	22,480	-
		2021.04.16.					
14	-	2021.06.15.	미계상	446	21,770	22,210	-
		2021.06.16.					
15	-	2021.07.08.	미계상	683	32,582	33,390	-
		2021.07.08.					
16	-	2021.07.26.	미계상	558	26,384	27,080	-
		2021.07.30.					

연 번	공사명	공사 품의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정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금액		
		공사 계약일	당초	정정	당초	수정	
17	-	2020.08.07.	미계상	443	21,560	22,190	-
		2020.08.20.					
18	-	2020.08.07.	미계상	505	21,912	22,560	-
		2020.08.20.					
19	-	2020.07.17.	미계상	789	34,320	35,330	-
		2020.12.16.					
20	-	2020.08.07.	미계상	462	21,951	22,530	-
		2020.10.23.					
21	-	2021.02.08.	미계상	542	21,978	22,620	-
		2021.02.08.					
22	-	2021.02.10.	미계상	932	37,580	38,660	-
		2021.02.01.					
23	-	2021.05.13.	미계상	509	23,980	24,600	-
		2021.05.12.					
24	-	2021.04.23.	미계상	468	21,970	22,120	-
		2021.07.09.					
25	-	2021.01.08.	미계상	518	24,904	25,560	-
		2021.01.12.					
26	-	2020.10.14.	미계상	470	21,780	22,450	-
		2020.10.20.					
27	-	2020.11.05.	미계상	718	32,857	33,723	-
		2020.11.09.					
합 계		27건		15,508	706,793	727,453	

【붙임2】

수익계약 절차 부적정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공사명	공사 계약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정				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금액*		
			당초	정정	당초	수정	
1	ㄴㄷ 공사	2020.09.15.	미계상	456	21,690	22,30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2	-	2021.06.10.	미계상	500	21,670	22,23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3	-	2020.11.27.	미계상	524	21,643	22,21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4	-	2020.12.28.	미계상	468	21,670	22,59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5	-	2021.02.10.	미계상	474	21,989	22,59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6	-	2021.02.10.	미계상	521	21,959	22,61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7	-	2021.04.16.	미계상	495	21,800	22,48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8	-	2021.06.16.	미계상	446	21,770	22,21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9	-	2020.08.20.	미계상	443	21,560	22,19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10	-	2020.08.20.	미계상	505	21,912	22,56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11	-	2020.10.23.	미계상	462	21,951	22,53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12	-	2021.02.08.	미계상	542	21,978	22,62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13	-	2021.07.09.	미계상	468	21,970	22,12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14	-	2020.10.20.	미계상	470	21,780	22,45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누락
합 계		14건					

\*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한 금액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6	<p><b>시설공사 계약 체결 시 승용비용 오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2021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 제3호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li> <li>*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li> <li>- 서울대학교는 2019. 1. 30. □□□ 대표 BD와 계약한 '서울대학교 노르 공사(계약금액 78,649천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감액 조정한 공사계약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정산하여 공사비 293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붙임】 "공사계약 산출내역서 작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1.부터 2021. 5.까지 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11명)</li> <li>○ 주의(11명)</li> <li>○ 시정(회수)</li> <li>- 공사비 과다 지급액 합계 41,137천원을 □□□ 등 17개 시 공사로 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li> </ul>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서울대학교 2교 공사’ 등 총 17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 조정한 공사계약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과소 정산하여 공사비 41,137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시설공사 계약내역서 작성 부적정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 계약일	공사 착공일	공사 계약 금액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 정정			준공금액			담당 부서	비고 (조정 항목)
					예정 가격 [①]	계약 금액 [②]	차액 [①-②]	당초 [③]	정정 [④]	환수 금액 [③-④]		
1	노르공사	2019.01.30.	2019.01.31.	78,649	1,903	1,670	233	78,649	78,356	293	-	안전관리비 조정
2	-	2019.12.16.	2019.12.18.	85,099	2,004	1,800	204	99,598	99,598	0	-	안전관리비 조정
3	-	2020.08.05.	2020.08.05.	370,000	9,108	8,661	447	370,000	369,571	429	-	안전관리비 조정
4	-	2021.05.10.	2021.05.10.	794,851	45,556	32,913	12,643	757,136	743,217	13,919	-	건강,연금,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5	-	2021.02.23.	2021.03.01.	112,244	3,768	3,337	431	103,907	103,907	0	-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6	-	2019.11.26.	2019.11.26.	1,174,900	32,644	24,006	8,638	1,070,300	1,057,365	12,935	-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7	-	2019.01.28.	2019.01.28.	68,994	3,020	2,712	308	72,270	72,204	66	-	건강,연금,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조정
8	-	2019.01.21.	2019.01.28.	52,013	1,189	1,043	146	52,014	51,846	168	-	안전관리비 조정
9	-	2019.01.28.	2019.01.28.	52,511	1,209	1,058	151	50,595	50,310	285	-	안전관리비 조정

(단위 : 천원)

연 번	공사명	공사 계약일	공사 착공일	공사 계약 금액	계약내역서 (원가계산서) 정정			준공금액			담당 부서	비고 (조정 항목)
					예 정 가 격 [①]	계 약 금 액 [②]	차 액 [①-②]	당 초 [③]	정 정 [④]	환 수 금 액 [③-④]		
10	-	2020.10.16.	2020.10.23.	250,917	6,871	7,620	749	293,402	289,261	4,141	-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준공시 안전관리비 증액
11	-	2019.08.26.	2019.09.01.	76,085	1,846	1,721	125	75,304	75,176	128	-	안전관리비 조정
12	-	2020.09.18.	2020.09.18.	96,430	2,215	1,947	268	96,430	96,159	271	-	안전관리비 조정
13	-	2019.08.01.	2019.08.10.	340,011	7,772	7,179	593	370,011	368,675	1,336	-	안전관리비 조정
14	-	2019.08.01.	2019.08.10.	765,638	41,549	38,743	2,806	893,387	887,787	5,600	-	건강,연금,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15	-	2020.07.01.	2020.07.06.	286,333	6,443	5,751	692	304,884	304,136	748	-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조정
16	-	2019.08.01.	2019.08.10.	64,860	4,642	4,569	73	105,201	104,898	303	-	건강,연금,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조정
17	-	2019.08.01.	2019.08.10.	56,360	3,735	3,120	615	54,041	53,526	515	-	건강,연금, 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조정
합 계		17건		4,725,895			29,122			41,137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7	<p><b>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b></p> <p>○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서울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구청장과 협의 없이 인문관1동 앞 조립식 패널 건물 1개동을 설치하여 영화칼슘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등 【붙임】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과 같이 미상일로부터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구청장 등과 협의 없이 위 조립식 패널 건물 등 가설건축물 총 124개동(연면적 합계 3,718㎡)을 설치하여 영화칼슘 보관창고 또는 시약 저장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관할청 협의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124개동에 대해 법령 등 관련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p>

【붙임】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

(단위 : m<sup>2</sup>)

연번	캠퍼스	소재지	관련 자산명	면적	구조	사용(관리) 기관		사용 용도
						기관	부서	
1	-	서울특별시 ▲▲구	인문관1(1동)	18	판넬조	-	-	엄화칼슘 보관창고
2	-	-	-	24	목조	-	-	재활용 분리수거장
3	-	-	-	19	판넬조	-	-	
4	-	-	-	19	판넬조	-	-	분리수거장
5	-	-	-	35	판넬조	-	-	재활용 분리 창고
6	-	-	-	7	판넬조	-	-	재활용 분리 창고
7	-	-	-	17	판넬조	-	-	사전거보관소
8	-	-	-	27	샌드위치 판넬조	-	-	창고
9	-	-	-	12	목조	-	-	분리수거장
10	-	-	-	12	컨테이너 박스	-	-	의료폐기물 보관소
11	-	-	-	27	철골조	-	-	폐시약저장고
12	-	-	-	27	목조	-	-	칸막이 팬스 (분리수거가림막)
13	-	-	-	12	컨테이너 박스	-	-	창고
14	-	-	-	16	판넬조	-	-	분리수거장
15	-	-	-	7	샌드위치 판넬조	-	-	폐지보관, 쓰레기 처리창고
16	-	-	-	20	컨테이너	-	-	폐시약 보관창고
17	-	-	-	26	컨테이너	-	-	쓰레기 분리장
18	-	-	-	68	샌드위치 판넬조	-	-	분리수거장
19	-	-	-	7	목조	-	-	폐기물 적재 공간
20	-	-	-	24	판넬조	-	-	물품보관창고
21	-	-	-	36	컨테이너 박스	-	-	
22	-	-	-	16	판넬조	-	-	폐수저장소
23	-	-	-	19	판넬조	-	-	창고
24	-	-	-	8	판넬조	-	-	창고
25	-	-	-	23	판넬조	-	-	****연구실 (실험용품 보관)
26	-	-	-	6	판넬조	-	-	미사용
27	-	-	-	8	판넬조	-	-	임시창고
28	-	-	-	4	판넬조	-	-	유독가스 재처리
29	-	-	-	76	판넬조	-	-	기계실

연번	캠퍼스	소재지	관련 자산명	면적	구조	사용(관리) 기관		사용 용도
						기관	부서	
30	-	-	-	24	벽체이용 천막구조	-	-	창고 (실험모형 등)
31	-	-	-	66	파이프조	-	-	창고 (실험모형 등)
32	-	-	-	64	판넬조	-	-	창고(폐시약 보관 등)
33	-	-	-	5	판넬조	-	-	창고
34	-	-	-	27	판넬조	-	-	창고
35	-	-	-	12	철골조	-	-	분리수거장
36	-	-	-	12	철골조	-	-	분리수거
37	-	-	-	36	컨테이너	-	-	창고및 분리수거장
38	-	-	-	21	컨테이너	-	-	토양지정폐기물 보관창고
39	-	-	-	12	목조	-	-	저장소
40	-	-	-	12	철골조	-	-	LPG저장소
41	-	-	-	20	컨테이너	-	-	폐기물분리 수거장
42	-	-	-	26	컨테이너	-	-	컨테이너
43	-	-	-	6	판넬조	-	-	폐수보관소
44	-	-	-	24	벽돌조	-	-	폐시약저장고
45	-	-	-	24	파이프조 및 벽돌조	-	-	계단실
46	-	-	-	12	컨테이너 박스	-	-	의료폐기물 보관소
47	-	-	-	48	컨테이너 박스	-	-	교육연구 장비보관
48	-	-	-	18	철골조	-	-	흡연실
49	-	-	-	12	철골조	-	-	음식물 쓰레기, 도시가스 정압기
50	-	-	-	20	판넬조	-	-	BSL3 실험실용 폐액탱크 보관실
51	-	-	-	110	컨테이너	-	-	창고및 휴게실
52	-	-	-	14	컨테이너	-	-	휴게실
53	-	-	-	112	파이프구조	-	-	비닐하우스
54	-	-	-	65	철골 및 샌드위치판넬	-	-	분리수거장
55	-	-	-	24	컨테이너	-	-	실험실 폐기물 보관창고
56	-	-	-	12	샌드위치 판넬조	-	-	실험실
57	-	-	-	22	철골구조	-	-	분리수거
58	-	-	-	8	철골구조	-	-	흡연실
59	-	-	-	12	컨테이너	-	-	현장사무소
60	-	-	-	20	컨테이너	-	-	창고
61	-	-	-	12	컨테이너	-	-	창고
62	-	-	-	12	컨테이너	-	-	창고
63	-	-	-	20	컨테이너	-	-	창고

연번	캠퍼스	소재지	관련 자산명	면적	구조	사용(관리) 기관		사용 용도
						기관	부서	
64	-	-	-	12	컨테이너	-	-	창고
65	-	-	-	20	컨테이너	-	-	창고
66	-	-	-	7	새시조	-	-	창고
67	-	-	-	22	판넬조	-	-	흡연실
68	-	-	-	16	컨테이너 박스	-	-	분리수거보관실
69	-	-	-	20	천막	-	-	물건 보관용 창고
70	-	-	-	28	철골조	-	-	분리수거
71	-	-	-	6	샌드위치 판넬조	-	-	기계실
72	-	-	-	7	조립식 플라스틱	-	-	창고
73	-	-	-	24	목조	-	-	조류사육시설
74	-	-	-	97	경량철골조	-	-	지정폐기물 보관
75	-	-	-	15	컨테이너 박스	-	-	의료폐기물보관소(약 및 폐시약저장고(우)
76	-	-	-	52	철골조	-	-	단상
77	-	-	-	6	판넬조	-	-	물건 보관용 창고
78	-	-	-	29	컨테이너 박스	-	-	옥상체력 단련실(탁구)
79	-	-	-	6	판넬조	-	-	창고
80	-	-	-	30	판넬조	-	-	물품보관 창고
81	-	-	-	132	판넬조	-	-	격납고
82	-	-	-	27	판넬조	-	-	창고
83	-	-	-	4	판넬조	-	-	옥외청소용품 보관
84	-	-	-	6	스텐리스조	-	-	주차관리초소
85	-	-	-	52	컨테이너박스 및 판넬조	-	-	비상발전기 시설 및 실외기 소음 차단용
86	-	-	-	40	판넬조	-	-	지구변압기/발전기
87	-	-	-	30	철파이프조	-	-	분리수거용
88	-	-	-	35	판넬조	-	-	교육 실습용
89	-	-	-	32	컨테이너 박스	-	-	학부 교육 실습용
90	-	-	-	32	컨테이너 박스	-	-	학부 교육 실습용
91	-	-	-	13	판넬조	-	-	지구변압기 /발전기
92	-	-	-	41	판넬조	-	-	소화전펌프실 /화장실
93	-	-	-	33	파이프구조	-	-	사료저장탱크
94	-	-	-	16	판넬조	-	-	재활용분리 수거장
95	-	-	-	41	판넬조	-	-	분리수거장
96	-	-	-	157	판넬조	-	-	창고 및 휴게실 (시설관리직)
97	-	-	-	18	벽돌조 및 판넬조	-	-	미사용

연번	캠퍼스	소재지	관련 자산명	면적	구조	사용(관리) 기관		사용 용도
						기관	부서	
98	-	-	-	17	컨테이너 박스	-	-	창고
99	-	-	-	33	판넬조	-	-	분리수거
100	-	-	-	16	블럭조 및 새시조	-	-	미사용
101	-	-	-	115	판넬조	-	-	미사용
102	-	-	-	38	판넬조	-	-	창고
103	-	-	-	11	파이프조	-	-	샤워장 미사용
104	-	-	-	18	샌드위치 판넬조	-	-	연구동(A) 물탱크실
105	-	-	-	6	철근 콘크리트	-	-	보일러실
106	-	-	-	84	목조	-	-	계단지붕
107	-	-	-	6	샌드위치 판넬조	-	-	물탱크 및 펌프실
108	-	-	-	84	목조	-	-	바베큐장
109	-	-	-	32	컨테이너	-	-	상시근로자 휴게실
110	-	-	-	6	컨테이너	-	-	자재창고
111	-	-	-	15	컨테이너	-	-	자재창고
112	-	-	-	25	파이프조	-	-	경운기창고
113	-	-	-	126	철골및 판넬구조	-	-	농기계창고
114	-	-	-	160	경량철골조	-	-	유리온실
115	-	-	-	103	쇠파이프조	-	-	비닐하우스
116	-	-	-	14	목조	-	-	휴게시설
117	-	-	-	10	목조	-	-	휴게시설
118	-	-	-	17	목조	-	-	실험용 동물 사육
119	-	-	-	5	목조	-	-	의료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
120	-	-	-	5	목조	-	-	생활쓰레기 보관
121	-	-	-	46	목조	-	-	생활쓰레기 보관
122	-	-	-	6	목조	-	-	수처리 약품 보관
123	-	-	-	5	목조	-	-	체육시설 비품 보관
124	-	-	-	45	판넬조	-	-	LPG저장(탱크) 시설
합 계			-	3,718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서울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8	<p><b>● 발간도서 관리 부당 등</b></p> <p>○ 「서울대학교 세출예산 집행지침」 Ⅱ. 일반지침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관리 세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규장각이 간행하는 자료는 망라하여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자료총서 사업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에 따르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고문서와 국보급 귀중 도서들 중 한국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영인·간행해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한국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b>【발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b> _____ ①</p> <p>- 서울대학교 ■은 2012년 ‘ㄴ口’를 500부 발간하고 그중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420부를 기증(무료배포 등 포함)하면서 무료로 수령받는 자에게 수령증을 받지 않고 배포*하였고, 그 결과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b>【붙임1】</b> “<b>● 발간도서 정리 현황</b>”과 같이 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간행된 위 ‘ㄴ口’ 등 발간도서 총 38,197부(총 57종) 중 30,710부를 기증(무료배포 등 포함)하면서 무료로 수령받는 자에게 수령증을 받지 않고 배포하여 2021. 10. 감사일 현재까지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p>	<p>&lt; ① 관련 &gt;</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향후 발간도서의 배포 및 재고 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p>&lt; ② 관련 &gt;</p> <p>○ 경징계(1명)</p> <p>&lt;별도조치&gt;</p> <p>○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p> <p>* '11년 법인화 이전 ■ 발간도서 중 영인지 등 일부는 중고 실거래(3만원~20만원)가 이뤄지는 도서로 실무자가 배포명단과 달리 무단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매품이더라도 원장의 허락 및 기념품등록대장에 기입없이 임의 배포될 수 없었으나, 법인화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발간도서관리대장은 폐기되고 관리하지 않고 있음</p> <p><b>【발간도서 무단반출에 관한 사항】</b> ————— ②</p> <p>- 서울대학교 BE는 2021. 10. 감사일 현재 잔존가치*가 있는데도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발간된 'ㄴㅅ'에 대해 기증·배포 후 남은 수량 80부를 ● 도서보관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만으로 2021. 1. 16.과 2021. 2. 10. 2회에 걸쳐 반출하면서 별도의 폐기절차나 내부 시행품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붙임2】 “규장각 발간도서 무단반출 현황”과 같이 위 'ㄴㅅ' 등 총 9,555부(총 47종) 발간도서를 반출하면서 별도의 폐기절차나 내부 시행품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음</p> <p>* (● 간행도서의 가치) ● 간행도서는 크게 ①영인본(한문), ②해제집(한글), ③한국학 관련 연구조서(한글), ④학술지, ⑤도록 등 5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중 고문헌을 영인(사진촬영)하고 해제를 붙여 전공자가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인본은 연구자용 및 전문가용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참고도서(공구서)로 활용되므로 중고책 사이트 및 서점에서 꾸준히 거래(보통 영인본은 3만원, 지도는 15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가 이뤄지고 있고, 더욱이 ㄴㅅ 등 일부 간행도서는 서울대학교 ● 내 전시장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음</p>	

【붙임1】

간행물 도서 정리 현황

(단위 : 부)

연번	종류	서명	권호	발행년	책수	발간 부수	전체 책수	보존 부수	기증 부수	판매 부수	폐기 부수	잔여 수량
1	고문서	ㄴ口	42	2012	1	500	500	5	420	0	2,500	75
2	고문서	-	43	2012	1	500	500	5	420	0		75
3	고문서	-	44	2013	1	300	300	5	265	0		30
4	고문서	-	45	2013	1	300	300	5	265	0		30
5	고문서	-	46	2014	1	300	300	5	265	0		30
6	고문서	-	47	2014	1	300	300	5	265	0		30
7	고문서	-	48	2015	1	300	300	5	265	0		30
8	고문서	-	49	2015	1	300	300	5	265	0		30
9	고문서	-	50	2016	1	300	300	10	260	0		30
10	고문서	-	51	2016	1	300	300	10	260	0		30
11	고문서	-	52	2016	1	300	300	10	260	0		30
12	고문서	-	53	2017	1	300	300	10	260	0		30
13	고문서	-	54	2017	1	300	300	10	260	0		30
14	고문서	-	55	2017	1	300	300	10	260	0		30
15	고문서	-	56	2019	1	300	300	10	260	0		30
16	고문서	-	57	2019	1	300	300	10	260	0		30
17	고문서	-	58	2019	1	300	300	10	260	0		30
18	고문서	-	59	2020	1	300	300	10	290	0		0
19	고문서	-	60	2021	1	300	300	10	177	0	0	113
20	관서지편	-		2013	1	300	300	5	295	0	0	0
21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75	0	15	0
22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75	0	15	0
23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74	0	16	0
24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77	0	13	0
25	의뢰편	-	上,中, 下	2016	3	300	900	30	547	0	323	0
26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25	0	65	0
27	문학편	-	1~6	2013	6	300	1,800	30	1,703	0	67	0
28	문학편	-	1~3	2014	3	300	900	15	845	0	40	0
29	문학편	-	1~3	2016	3	300	900	30	607	0	263	0
30	문학편	-	1~3	2017	3	300	900	30	831	0	39	0
31	유학편	-	1~3	2014	3	300	900	15	765	0	120	0
32	유학편	-		2016	1	300	300	10	290	0	0	0
33	유학편	-		2016	1	300	300	10	290	0	0	0

연번	종류	서명	권호	발행년	책수	발간 부수	전체 책수	보존 부수	기증 부수	판매 부수	폐기 부수	잔여 수량
34	유학편	-	上,中, 下	2017	3	300	900	30	729	0	141	0
35	유학편	-	上,中, 下	2020	3	300	900	30	765	0	105	0
36	어학편	-		2012	1	500	500	5	405	0	90	0
37	어학편	-	上,中, 下	2020	3	300	900	30	777	0	93	0
38	예술편	-	1~2	2019	2	300	600	20	560	20	0	0
39	계보편	-		2019	1	300	300	10	229	0	61	0
40	계보편	-		2019	1	300	300	10	290	0	0	0
41	근대편	-	1~6	2021	6	300	1,800	390	1,410	0	0	0
42	근대편	-		2021	1	300	300	71	229	0	0	0
43	금호편	-	1~4, 續	2012	5	500	2,500	25	1,455	0	1,020	0
44	전시도록	-		2012	1	2,000	2,000	141	1,859	0	0	0
45	전시도록	-		2013	1	350	350	21	329	0	0	0
46	전시도록	-		2013	1	1,350	1,350	29	1,230	97	0	0
47	전시도록	-		2014	1	1,000	1,000	26	974	0	0	0
48	전시도록	-		2015	1	1,200	1,200	39	1,006	155	0	0
49	전시도록	-		2016	1	1,500	1,500	36	927	37	0	500
50	전시도록	-		2017	1	1,000	1,000	13	925	62	0	0
51	전시도록	-		2017	1	1,000	1,000	56	926	18	0	0
52	전시도록	-		2019	1	1,000	1,000	421	517	62	0	0
53	특별도록	-		2009	1	497	497	2	494	1	0	0
54	특별도록	-		2020	1	1,000	1,000	581	419	0	0	0
55	특별도록	-		2014	1	500	500	20	480	0	0	0
56	특별도록	-		2015	1	1,000	1,000	651	339	10	0	0
57	특별도록	-		2015	1	1,000	1,000	275	700	25	0	0
합계			-	-	-	28,097	38,197	3,307	30,710	487	4,986	1,213

【붙임2】

간행물 도서 폐기 현황

(단위 : 부, 천원)

연번	종류	서명	권호	발행년	책수	발간 부수	전체 책수	보존 부수	기증 부수	부단 반출 부수	중고 사이트 거래 가액	중고 사이트 판매처
1	해제	나비	1~2	2000~2001	2	확인 불가		10	확인 불가	80	20	-
2	해제	-	1~2	2002~2003	2	확인 불가		10	확인 불가	20	10	-
3	해제	-	1~6	1994~1999	6	확인 불가		30	확인 불가	40	20	-
4	해제	-		2004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30	15	-
5	해제	-	1~4	1995~1998	4	확인 불가		20	확인 불가	40	15	-
6	해제	-	5~14	1999~2006	10	확인 불가		50	확인 불가	520	10	-
7	해제	-	1~15	2003~2011	15	확인 불가		75	확인 불가	1,140	15	-
8	해제	-	1~17	2011~2020	17	300	5,100	170	확인 불가	740	20	-
9	해제	-	1~3	1998~1999	3	확인 불가		15	확인 불가	20	30	-
10	해제	-	1~4	2000~2001	4	확인 불가		20	확인 불가	11	30	-
11	해제	-	1~4	2002~2003	4	확인 불가		20	확인 불가	18	20	-
12	해제	-	1~3	2003~2005	3	확인 불가		13	확인 불가	40	20	-
13	고문서	-	1	1986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2,500	20	-
14	의뢰편	-	上,中, 下	1994	3	확인 불가		15	확인 불가	4	품질	-
15	의뢰편	-	上,下	1994	2	확인 불가		10	확인 불가	1	60*	-
16	의뢰편	-	上,下	1994	2	확인 불가		10	확인 불가	1	-	-
17	의뢰편	-	1~3	2001	3	확인 불가		15	확인 불가	3	30	-
18	의뢰편	-		2002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10	30	-
19	의뢰편	-	上,下	2003	2	확인 불가		10	확인 불가	14	30*	-
20	의뢰편	-		2005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1	30	-
21	의뢰편	-	1	2008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85	30	-
22	의뢰편	-	2	2008	1	확인 불가		5	확인 불가	85	30	-
23	의뢰편	-		2016	1	300	300	10	275	15	30	-

연번	종류	서명	권호	발행년	책수	발간부수	전체책수	보존부수	기증부수	부단반출부수	중고사이트거래가액	중고사이트판매처
24	의케편	-		2016	1	300	300	10	275	15	30	-
25	의케편	-		2016	1	300	300	10	274	16	30	-
26	의케편	-		2016	1	300	300	10	277	13	30	-
27	의케편	-	上,中,下	2016	3	300	900	30	547	323	50	-
28	의케편	-		2016	1	300	300	10	225	65	50	-
29	문학편	-	1~3	2011	3	확인불가		15	확인불가	21	80*	-
30	문학편	-	1~2	2011	1	확인불가		10	확인불가	300	50	-
31	문학편	-		2011	1	확인불가		5	확인불가	116	30	-
32	문학편	-		2011	1	확인불가		5	확인불가	134	20	-
33	문학편	-	1~6	2013	6	300	1,800	30	1,703	67	150*	-
34	문학편	-	1~3	2014	3	300	900	15	845	40	90*	-
35	문학편	-	1~3	2016	3	300	900	30	607	263	100*	-
36	문학편	-	1~3	2017	3	300	900	30	831	39	40**	☐ 전시장
37	유학편	-	1~4	2003	4	확인불가		20	확인불가	85	30	-
38	유학편	-	1~6	2007~2008	6	확인불가		30	확인불가	340	30	-
39	유학편	-	1~3	2014	3	300	900	15	765	120	100*	-
40	유학편	-	上,中,下	2017	3	300	900	30	729	141	40**	☐ 전시장
41	유학편	-	上,中,下	2020	3	300	900	30	765	105	40**	☐ 전시장
42	지리지편	-	1~22	2003~2009	22	확인불가		110	확인불가	380	20	-
43	어학편	-		2012	1	500	500	5	405	90	30	-
44	어학편	-	上,中,下	2020	3	300	900	30	777	93	40**	☐ 전시장
45	과학편	-	1~10	2006~2009	10	확인불가		50	확인불가	290	25	-
46	계보편	-		2019	1	300	300	10	229	61	40**	☐ 전시장
47	금호편	-	1~4,續	2012	5	500	2,500	25	1,455	1,020	30	-
합계			-	-	-	5,800		1,098	10,984	9,555	-	

\* 해당도서는 1권당 가격이 아니라 합본(2권이상의 set) 가격임

\*\* 해당도서는 중고거래사이트 뿐만아니라, 서울대학교 ☐ 전시장 내에서 외부인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는 도서